

**2022년 대전광역시**

---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노동&생활환경 실태조사  
종합 보고서**

---

**2022. 11.**





**2022년 대전광역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 & 생활환경 실태조사**



**책임연구**

홍춘기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장

**공동연구**

나규정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정책국장

## 〈본문 목차〉

I. 서론 .....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	1
3. 연구 방법 .....	2
4. 실태조사 개요 .....	2
II.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현황과 쟁점 .....	5
1. 대전지역 노동자 현황과 소규모사업장 현황 .....	5
2. 소규모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 .....	7
3.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의 쟁점 .....	9
III. 대전광역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생활환경실태 설문조사 분석 ..	10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	10
2. 종사유형 .....	14
3. 노동실태 .....	23
4. 노동환경에 대한 만족도 .....	30
5. 대전광역시 정책 제안 .....	35
4. 이해대변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과 참여 .....	39
IV. 소규모사업장,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	41
1. 소규모사업장,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제도 검토 .....	41
2.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한 대전광역시 정책제언 .....	45
1)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증진을 위한 대전광역시 조례 정비 .....	45
2)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증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활성화 .....	45
3)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 .....	45
참고문헌 .....	49

V.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노동&생활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간담회	50
1. 지역별 간담회 결과	50
1) 지역별 간담회 진행	50
2) 지역별 간담회 결과	50
3) 지역별 간담회 사진	51
VI.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노동권익증진 한마당	56
1. 노동권익증진 한마당 개요	56
1) 일시, 장소	56
2) 행사 계획	56
3) 행사 포스터	56
4) 노동권익증진 한마당 결과	59
5) 행사 사진	60
부록 (설문지)	68

## 〈표 목차〉

〈표 2-1〉 충청지방통계청 (2022년 9월 기준)	5
〈표 2-2〉 대전광역시 2019년 사업체조사 통계표	6
〈표 2-3〉 대전광역시 2020년 사업체조사 통계표	6
〈표 3-1〉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종별 현황	18
〈표 4-1〉 8개 특광역시 및 경기도 노동관련 주요 조례 현황	40
〈표 4-2〉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감정노동보호 조치 현황	43
〈표 4-3〉 지방정부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 및 위원회 설립 현황	43
〈표 4-4〉 광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추이	44
〈표 4-5〉 서울, 경기, 광주, 충남 노동기본계획 비전, 목표, 과제(1기 정책)	45

## 〈그림 목차〉

[그림 2-1] 고용노동부 발표(2021.12.30.)	7
[그림 2-2] 고용노동부 발표(2021.12.30.)	8
[그림 2-3] 2016-2020 사업장 규모별 노동조합 조직률 고용노동부 발표	8
[그림 3-1] 응답자 성별	10
[그림 3-2] 응답자 연령	11
[그림 3-3] 응답자들의 거주지별 분류	11
[그림 3-4] 응답자의 직장 주소별 분류	12
[그림 3-5] 응답자들의 가구원 수	12
[그림 3-6] 응답자들의 직업분류	13
[그림 3-7] 응답자들의 직업분류	13
[그림 3-8] 이전 경제활동 상황	14
[그림 3-9] 현재 직업별 전직 종사유형	15
[그림 3-10] 사업장 규모별 분류	15
[그림 3-11] 사업장 규모별 성별 응답자	16
[그림 3-12] 응답자들의 근로기간	16
[그림 3-13] 응답자들의 주당 노동시간	17

[그림 3-14] 응답자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17
[그림 3-15] 근로계약서 미작성 응답자 성별 분류	18
[그림 3-16] 고용형태별 분류	19
[그림 3-17] 여성 고용형태별 분류	19
[그림 3-18] 남성 고용형태별 분류	20
[그림 3-19] 20대 고용형태별 분류	20
[그림 3-20] 30대 고용형태별 분류	21
[그림 3-21] 40대 고용형태별 분류	21
[그림 3-22] 50대 고용형태별 분류	22
[그림 3-23] 60대 이상의 고용형태별 분류	22
[그림 3-24] 응답자 보험별 가입 여부	23
[그림 3-25] 응답자들의 월평균 임금	24
[그림 3-26] 응답자 성별 월평균 급여	24
[그림 3-27] 응답자 가구원 중 본인 소득 비율	25
[그림 3-28] 응답자 가구지출 항목	26
[그림 3-29] 응답자 부당노동사례	26
[그림 3-30] 응답자 부당 노동 사례	27
[그림 3-31] 직장 내 부당사례 경험 성별 분류	27
[그림 3-32] 부당한 사례에 대한 대응	28
[그림 3-33] 직장 내 복지제도	29
[그림 3-34] 직장 및 업무 만족도	30
[그림 3-35] 직종별 직장 및 업무 만족도	31
[그림 3-36] 응답자 희망 복지제도	32
[그림 3-37] 응답자 직장에서 일을 지속하는 이유	32
[그림 3-38] 응답자 직장 이직 의사	33
[그림 3-39] 응답자 성별 이직 의사	33
[그림 3-40] 이직 응답자들의 이유	34
[그림 3-41]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전시 정책 우선 선호도	35
[그림 3-42] 돌봄노동자 대전시 정책 우선도	36
[그림 3-43] 의료직 대전시 정책 우선도	36

[그림 3-44] 특수고용직 대전시 정책 우선도	37
[그림 3-45] 프리랜서/알바 대전시 정책 우선도	37
[그림 3-46]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38
[그림 3-47] 응답자들의 네트워크 필요 여부	39
[그림 3-48] 직종별 네트워크 필요 여부	39
[그림 3-49] 응답자들의 네트워크 참여 의사	40



---

## I. 서론

### 1. 연구 배경

- 노동사각지대로 몰리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
  - 대전광역시에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전국평균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음. 더구나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상황으로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한 형편으로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 코로나19 이후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변화 감지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전시의 고용상황은 악화되고 있고, 특히 가장 많은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고용과 노동강도의 악화로 현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필요함.
-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증가로 실태 파악 필요
  -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으로,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들에 대한 대전시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실태 파악이 필요함.

###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 소규모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환경과 생활요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생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취약한 노동환경의 상황을 살펴보고,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의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노동인권의 사각지대 있는 미조직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근로기준법 예외적용이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증가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증가는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증가로 이어져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고 있음. 그럴 뿐만 아니라 소규모,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은 노동자 자신의 권리보호와 증진에 한계로 이어짐.

-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노동 권리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올해 대전광역시는 ‘대전시 노동정책기본조례’를 만들고 노동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어, 소규모, 미조직노동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대안 모색에 이번 실태조사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미조직노동자들을 위한 이해대변 조직과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지는 노동존중 대전실현을 기대함.
  - 소규모,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사각지대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할 이해대변 조직에 대한 다양한 대안 모색을 통해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다른지역의 다양한 이해대변 조직들을 살펴보고, 대전지역 소규모,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해 줄 대안모색을 통해 노동사각지대 해소와 모든 노동이 존중되는 대전광역시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3. 연구 방법

#### 1)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 현황 및 쟁점 검토

- 대전지역 사업체 통계표와 선행 실태조사 검토함.

#### 2) 설문조사

-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 노동환경 및 생활환경 설문조사를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진행하여, 대전지역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으로 일하고 있는 642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함.
- 설문조사는 기본 개인환경 조사와 종사유형, 노동실태, 노동환경 만족도 및 정책 제안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4. 실태조사 개요

- 사업명 : 2022년 대전광역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노동&생활환경 실태조사
- 사업기간 : 2022년 6월 - 2022년 12월 (7개월간)

- 사업방식 : 대전광역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조사 및 간담회
- 조사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 1) 실태조사 사전작업

- 설문조사 사전 조사 및 기획 : 5월 - 6월
- 설문조사 문항 설계 : 5월 - 6월
- 길잡이 모집 및 교육 : 6월

#### 2) 설문조사 (7월 – 8월)

-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실태조사

#### 3) 실태조사 분석 (8월 – 10월)

-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에서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 진행

#### 4) 실태조사 사전작업

- 실태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5개(동구, 대덕구, 중구, 서구, 유성구) 구별로 2회 씩 간담회를 통해 면접조사를 진행함. 1회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참여하였음.
- 간담회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논의와 직종별 노동환경과 정책제안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음.

#### 5) 노동권익증진 한마당 개최 (9월 29일)

- 120명의 현장 노동자를 초대하여 10개 직종별 토론 진행
- 직종별 현황에 대한 공유와 권리선언 노랫말로 표현하기 진행

#### 6)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11월)

- 분석작업을 통해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노동&생활환경 실태조사 보고회 개최



## II.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현황과 쟁점

### 1. 대전지역 노동자 현황과 소규모사업장 현황

	2021 9월	2022 8월	2022 9월	전년동월대비	
				증감	증감률
15세 이상 인구	1,289	1,288	1,288	-1	-0.1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814 63.2	816 63.4	813 63.2	-1 0.0	-0.1
취업자 (고용률)	797 61.8	801 62.2	798 61.9	1 0.1	0.1
농 가 비 농 가	16 781	13 789	12 785	-3 4	-21.2 0.6
농림어업	9	10	9	1	7.1
광공업	93	75	78	-14	-15.5
· 제조업	92	75	78	-14	-15.0
사회간접자본및기타	696	717	710	15	2.1
· 건설업	67	67	64	-3	-4.5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146	157	155	9	6.4
·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	394	405	404	10	2.6
· 전기운수통신금융	89	88	87	-2	-2.3
관리자,전문가	217	232	233	15	6.9
· 관리자	9	9	10	1	9.9
· 전문가및관련종사자	208	223	223	14	6.9
사무종사자	135	144	142	8	5.6
서비스,판매종사자	179	177	177	-2	-1.2
· 서비스종사자	98	98	99	1	0.8
· 판매종사자	81	79	78	-3	-3.7
농림어업숙련종사자	8	10	10	2	22.5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	258	238	236	-21	-8.3
·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73	65	64	-9	-12.1
·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71	68	69	-2	-3.1
· 단순노무 종사자	113	106	103	-10	-9.2
비임금근로자	166	155	153	-13	-7.7
자영업자	146	137	136	-10	-6.9
·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45	45	45	1	1.3
·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101	93	90	-11	-10.5
· 무급가족종사자	20	18	17	-3	-13.4
임금근로자	631	646	644	14	2.2
· 상용근로자	455	478	482	28	6.1
· 임시근로자	148	134	128	-20	-13.6
· 일용근로자	29	35	35	6	21.4
실업자 (실업률)	18 2.2	15 1.8	16 2.0	-2 -0.2	-10.2
비경제활동인구	474	472	475	0	0.0
· 육아	27	27	26	-1	-4.8
· 가사	180	186	186	6	3.3
· 통학	119	104	108	-11	-9.0

표 2-1 충청지방통계청 2022년 9월 기준 (단위 천명, %)

- 대전광역시발표 사업체조사 통계표를 보면, 2019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규모가 27.55%,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규모는 61.22였으나 2020년 5인 미만 노동자들은 30.30%로 늘어났으며 50이지만 사업장의 노동자 규모는 62%로 약간 늘어남. 문제는 근로기준법 일부 예외적용을 받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증가로 사각지대 노동자

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음. 코로나19 영향으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단위 명, %)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비율
TT 전체산업	119,628	633,418	100.00
1~4명	97,090	174,488	27.55
5~9명	13,645	85,757	11.54
10~19명	4,822	63,422	10.01
20~49명	2,574	76,791	12.12
50~99명	908	62,253	9.83
100~299명	459	73,049	11.53
300~499명	59	22,390	3.53
500~999명	47	32,289	5.10
1000명이상	24	42,979	6.79

표 2-2 대전광역시 2019년기준 사업체조사 통계표

(단위 명, %)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비율
TT 전체산업	164,406	691,264	100.00
1~4명	142,832	209,466	30.30
5~9명	12,712	81,163	11.74
10~19명	4,750	62,687	9.07
20~49명	2,516	75,256	10.89
50~99명	958	66,403	9.61
100~299명	477	75,484	10.92
300~499명	81	30,836	4.46
500~999명	51	35,900	5.19
1000명이상	29	54,069	7.82

표 2-3 대전광역시 2020년 기준 사업체조사 통계표

## 2 소규모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

### 1) 50인 미만 사업장의 이해대변 조직률 저조

-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에 이른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함. 하지만 1100만 명의 노동자가 속해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노조 조직률은 0.2%로 변함이 없음. 그나마 2018년부터 0.1%에서 2020년 0.2%로 늘어난 상황임.
- 헌법에서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노동환경 등 처우개선과 권리신장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었음에도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은 이 노조할 권리의 행사를 행사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대전지역에서도 전체 노동자 50%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음.
-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가 권리증진을 위한 대안을 찾고 있지 못함.



그림 2-1 고용노동부 발표 2021. 12. 30 발표

**□ 연도별 노조 조직률 및 조합원수**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조직률(%)	10.1	10.3	10.3	10.3	10.2	10.3	10.7	11.8	12.5	14.2
조합원수(천명)	1,720	1,781	1,848	1,905	1,939	1,967	2,089	2,332	2,540	2,805

**□ 연도별 노동조합 수**

구 分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노조수(개)	5,120	5,177	5,305	5,445	5,794	6,164	6,239	5,868	6,156	6,564

**□ 연도별 민간·공공부문 조직현황**

구 分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민간(%)	8.2	8.5	9.0	9.7	10.1	11.3
공공(%)	62.3	62.2	63.2	68.4	70.5	69.3

**□ 상급단체별 조직현황**

구 分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노총	대한노총	전국노총	미가맹
조합원수(명)	1,153,863	1,134,056	77,422	15,648	6,981	416,663
노조수(개)	2,506	374	100	24	23	3,537

**□ 조직형태별 조직현황**

구분	기업별노조	초기업노조	총계
조합원수(명)	1,109,480 (39.6%)	1,695,153 (60.4%)	2,804,633
노조수(개)	5,941 (90.5%)	623 (9.5%)	6,564

그림 2-2 고용노동부 2021. 12. 30 발표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300명 이상	49.2%	54.8%	50.6%	57.3%	55.1%
	270만203명 중 132만8220명	264만7908명 중 145만1438명	249만4000명 중 126만1634명	246만6000명 중 141만3654명	245만8000명 중 135만3698명
	10.6%	8.9%	10.8%	14.9%	15.0%
100~299명	10.6%	8.9%	10.8%	14.9%	15.0%
	197만8585명 중 20만9003명	198만3521명 중 17만6843명	200만8000명 중 21만6781명	205만7000명 중 30만7146명	199만3000명 중 29만9531명
	2.9%	1.7%	2.2%	3.5%	3.5%
30~99명	2.9%	1.7%	2.2%	3.5%	3.5%
	399만6812명 중 11만4452명	399만581명 중 6만8521명	389만1000명 중 8만7500명	392만7000명 중 13만6537명	375만 명 중 13만805명
	0.2%	0.1%	0.1%	0.2%	0.2%
30명 미만	0.2%	0.1%	0.1%	0.2%	0.2%
	1177만294명 중 2만926명	1206만7739명 중 9402명	1175만3000명 중 1만2846명	1156만8000명 중 2만6909명	1143만4000명 중 1만9290명

그림 2-3 2016~2020 사업장 규모별 노동조합 조직률 고용노동부 발표

### **3.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의 쟁점**

#### **1) 근로기준법 예외적용**

-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한 노동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법이 근로기준법임.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일부 조항만을 적용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1999년과 2019년에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배제가 평등권 위배가 아니며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근로기준법 ‘제 11조 2항에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법령주요내용 게시(제 14조), 취업규칙신고(제93조)는 10인 이상 의무조항임. 또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 제한(제23조1항), 경영상 해고제한/우선재고용(제24조, 25조), 해고시서면통지(제27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33조), 휴업수당(제46조), 근로시간제한/연장근로상한/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제 50조-53조, 56조), 관공서 공휴일 보장(제55조 2항), 연차유급휴가(제60조-62조), 생리휴가/태아검진시간/유급수유시간 (제 73조, 74조2항, 75조), 직장내 괴롭힘 금지/괴롭힘 발생시 조치(제76조2항-3항)등이 적용 제외됨.

#### **2)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 영세사업장, 비정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소규모사업장 일수록 근로기준법 위반사례들이 많아, 취약계층 노동자들일수록 노동권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음.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지역사회 관심과 지원이 필요 함.

#### **3) 이해대변 조직화 필요**

- 30인 미만 사업장 0.2%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취약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악영향 을 주고 있음.
-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있는 이해대변 조직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체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필요함. 미조직노동자들에게 노동공제회, 노동조합, 네트워크 등 자주적 단결권에 의한 이해대변조직과 권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직이 적극적으로 고민되어야 함.

---

### III. 대전광역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생활환경실태 설문조사 분석

####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 전체 응답자 642명 중 여성은 67%, 남성은 33% 차지하였음.



그림 3-1 응답자 성별

- 응답자들의 연령분포는 10대 2명, 20대 103명, 30대 135명, 40대 200명, 50대 146명, 60대 이상 56명으로 골고루 분포가 이루어짐.
- 3~4~50대가 전체 응답자의 85% 정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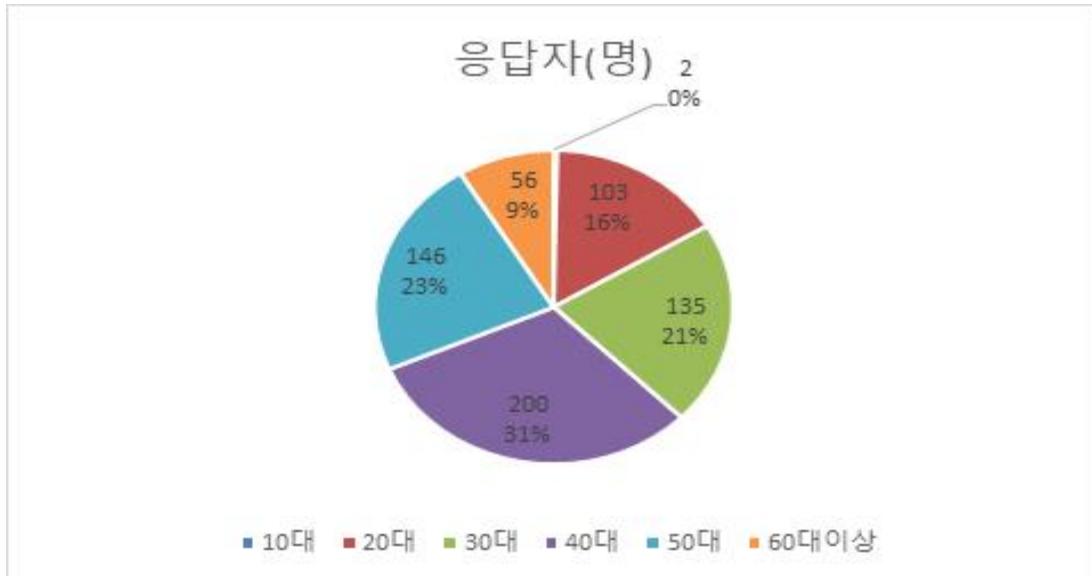


그림 3-2 응답자 연령

- 거주지별로는 서구 239명, 유성구 118명, 중고 107명, 대덕구 108명, 동구 63명이 참여 함.
- 직장별로는 서구 184명, 유성구 152명, 대덕구 126명, 중구 114명, 동구 56명 순으로 나타남. 대전광역시 구별 인구 분포와 유사하게 응답자들도 분포됨.

##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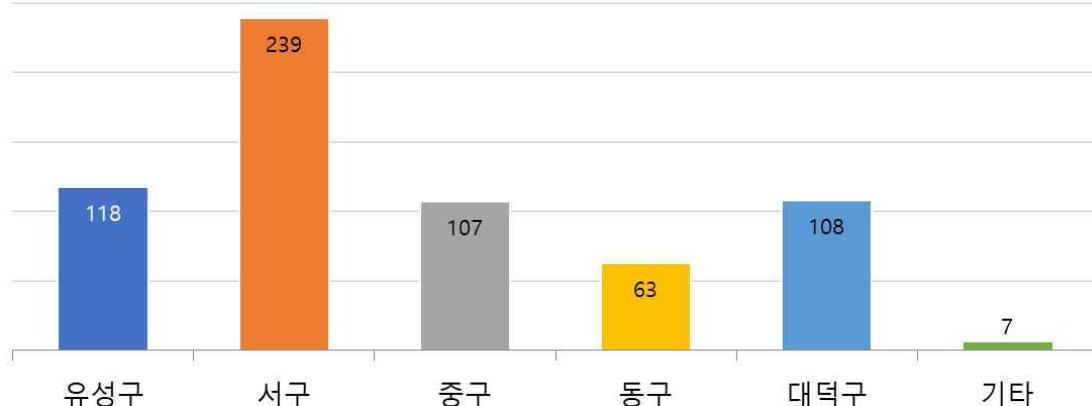


그림 3-3 응답자들의 거주지별 분류 (단위 : 명)

## 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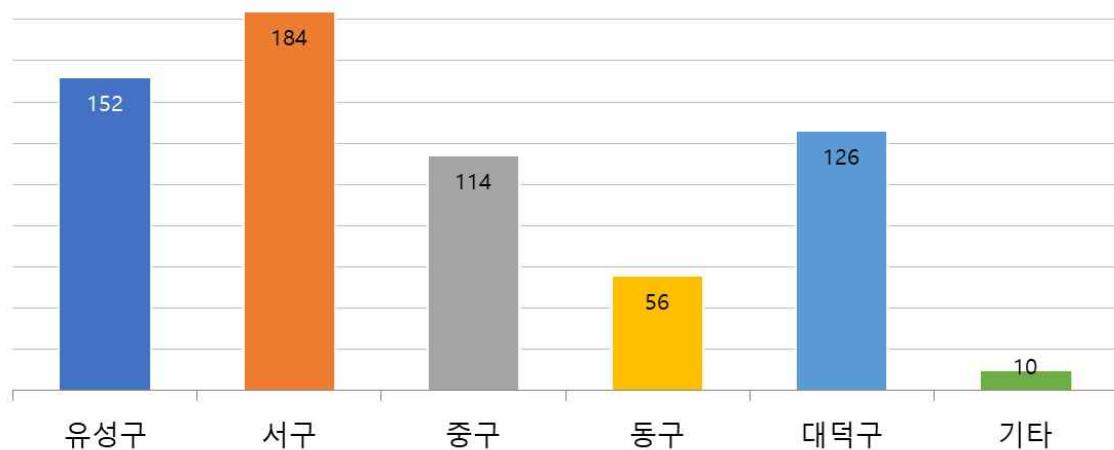


그림 3-4 응답자의 직장 주소별 분류 (단위 : 명)

- 응답자들의 가구원 수는 1인 가구 17%, 2인 가구 17%, 3인 가구 23%, 4인 가구 33%, 5인 가구 10%로 나타남.
- 전국평균 가구당 가구원 수는 2.3명이며, 대전은 2.2명임.

## 가구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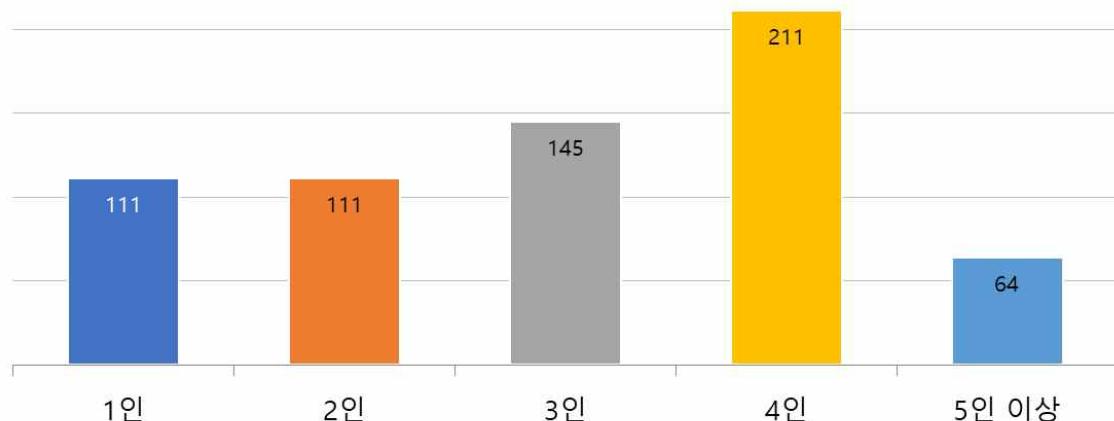


그림 3-5 응답자들의 가구원 수 (단위 : 명)

- 응답자들의 직업 분류는 크게 12가지 직업군으로 분류하여 정리함. 응답자들이 직업란에 직접 작성한 직업을 참고로 정리함.
- 사무직은 18%, 특수고용직 12%, 돌봄직 11%, 프리랜서/알바는 11%, 영업/서비스직은 10%, 경비/관리직은 7%, 사회서비스직 7%, 상담직(콜센터등) 6%, 현장/생산직 6%, 의료직 5%, 연구/개발직 4%, 활동가 3%로 전 직종에서 골고루 분포됨.

- ◆ 사무직 : 사무업무, 회사원 등
- ◆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치위생사 등
- ◆ 사회서비스직 : 사회복지사, 복지관, 청소년지도사, 마을 계획 등
- ◆ 활동가 : 중간지원기관, NGO, 노동조합 근무 등
- ◆ 연구/개발직 : 연구원, 프로그램 개발자, 엔지니어 등
- ◆ 프리랜서/알바 : 학생, 주부, 단기직 등
- ◆ 현장/생산직 : 현장직, 생산직, 제조업 근무 등
- ◆ 돌봄노동직 : 보육교사,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 ◆ 경비/관리직 : 경비, 관리사, 관리사무소, 미화, 지킴이 활동 등
- ◆ 특수고용직 : 배달, 택배, 강사, 검침원, 방문교사 등
- ◆ 상담직 : 콜센터, 상담원, 텔레마케터 등
- ◆ 영업/서비스직 : 마트, 식당, 보험설계사, 판매직 등

그림 3-6 응답자들의 직업분류



그림 3-7 응답자 직업분류 (단위 : 명)

## 2. 종사유형

- 이전 경제활동 영역에 관한 질문에는 정규직 36%, 비정규직 23%, 무직 17%, 프리랜서/특수고용종사자 11%, 자영업자/개인사업 7%, 기타 3%, 활동가 3%로 나타남.
- 현재 직업별로 전직 종사유형을 보면 계약직은 비정규직, 경제활동 없음, 정규직 순이었고, 비정규직은 과거 비정규직, 정규직 순이었음.
- 시간제/파트타임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경제활동없음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정규직노동자들은 과거 정규직, 경제활동없음, 정규직순으로 종사한 것으로 나타남.
-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에 주로 종사했던 것으로 나타남.

## 이전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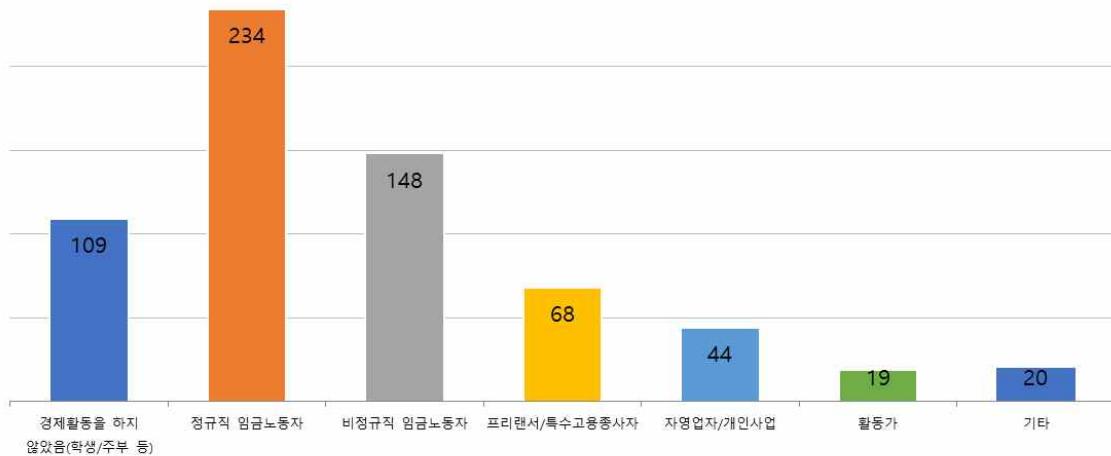


그림 3-8 이전 경제활동 상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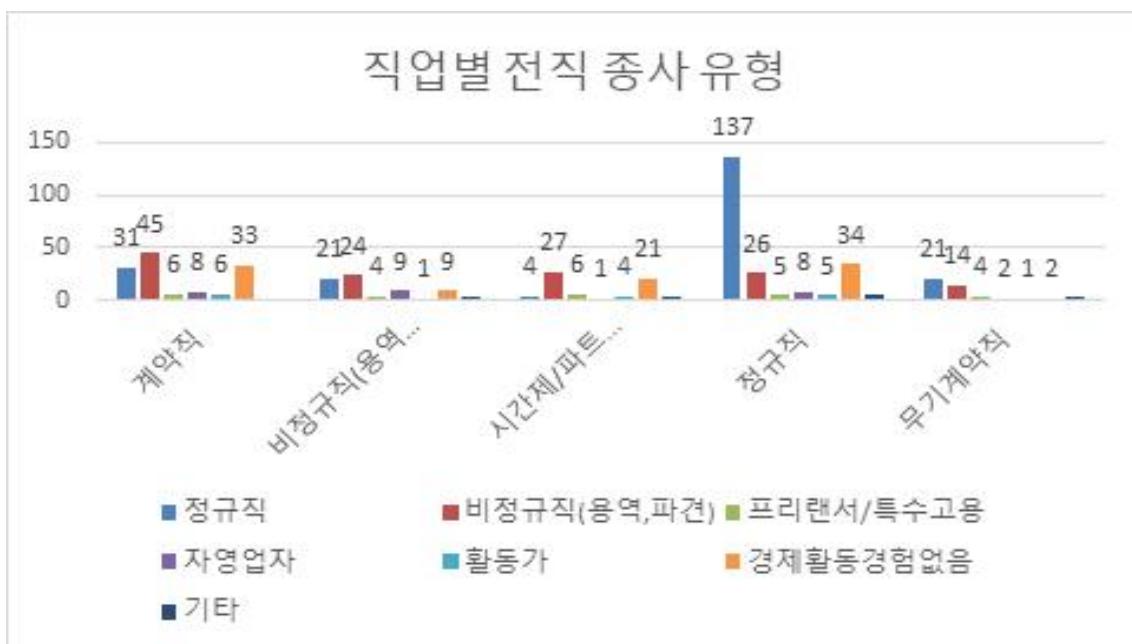


그림 3-9 현재 직업별 전직 종사 유형 (단위 : 명)

- 직원 규모에 대한 응답에는 5인 미만 사업장 24%, 5인 이상-10인 미만 사업장은 22%, 10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은 26%, 30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16%, 50인 이상(비정규직에 한함) 사업장은 12%로 나타남. 조사한 전체 규모별로 골고루 조사됨.



그림 3-10 사업장 규모별 분류

- 성별 사업장 규모를 분석해 보면 여성은 10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109명, 5인 미만이 107명으로 가장 많이 응답해 주었고, 남성은 10인 이상-30인 미만, 5인 이상-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응답해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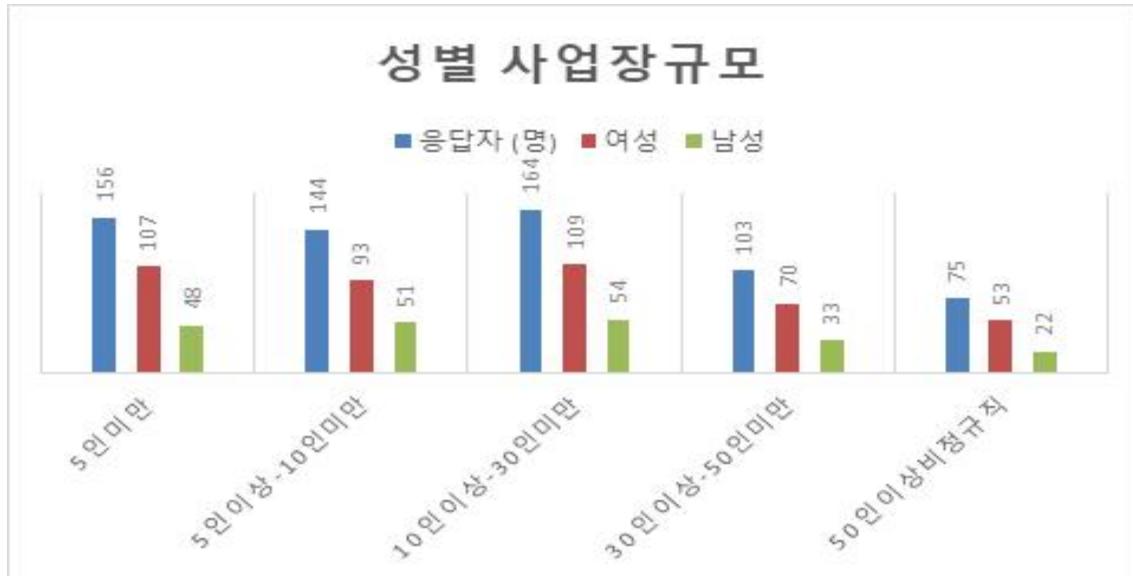


그림 3-11 사업장 규모별 성별 응답자

- 현재 직장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3년 이상이 250명 39%, 1년 이상-3년 미만이 26%, 6개월 미만이 18%,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17% 정도 나타남. 1년 미만 종사한 노동자들이 35%나 됨.

## 근로 기간(현 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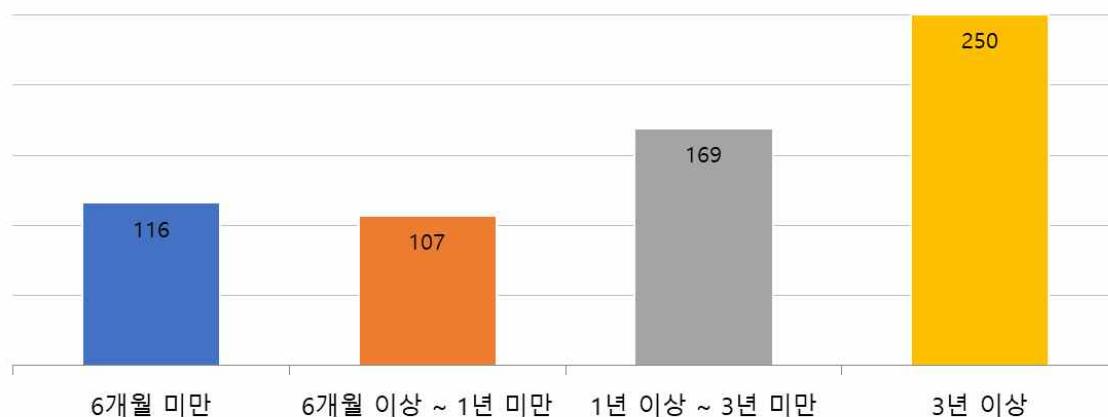


그림 3-12 응답자들의 근로기간

- 응답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주 40시간 이상-52시간 이하 49%, 주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17%, 주 15시간 이상-30시간 미만이 14%, 주 15시간 미만도 14%로 나타남. 4대 보험과 주휴수당에서 제외되는 노동자들도 89명이 응답해 줌.

## 주당 노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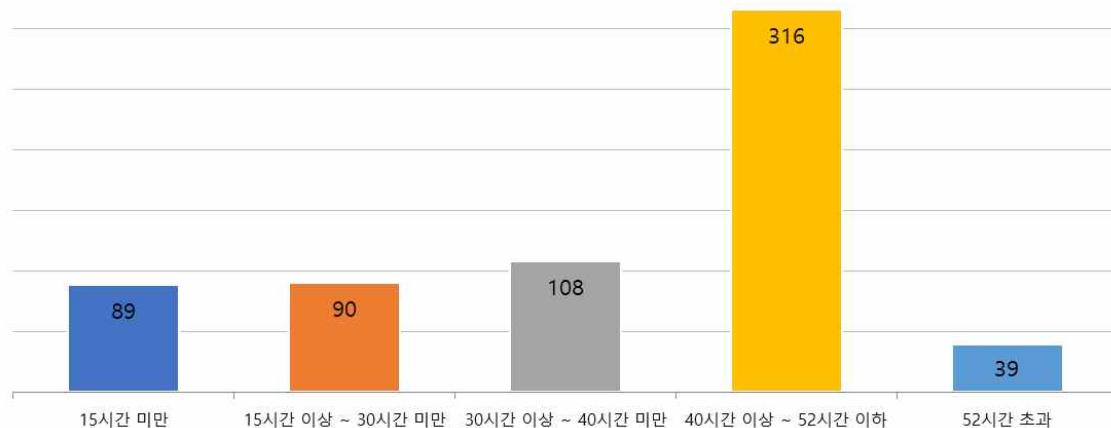


그림 3-13 응답자들의 주당 노동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하여는 14%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있어, 아직도 근로계약서 없이 노동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함.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그림 3-14 응답자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직종	경비 / 관리 직	돌봄 직	사무 직 / 회사 원	사회 서비스직	상담 직	연구 / 개발 직	영업 / 서비스직	의료 직	생산 / 제조 직	특수 고용 직	프리 랜서 / 알바	활동 가
근로 계약 미작 성	1	1	13	1	1	5	14	3	8	22	17	4

표 3-1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종별 현황 (단위 : 명)

-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자들의 직종별 현황을 보면 사무직과 영업서비스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알바 노동자들이 다수 보임.

- 근로계약서 미작성 응답자들을 성별로 보면 여성이 59%, 남성이 3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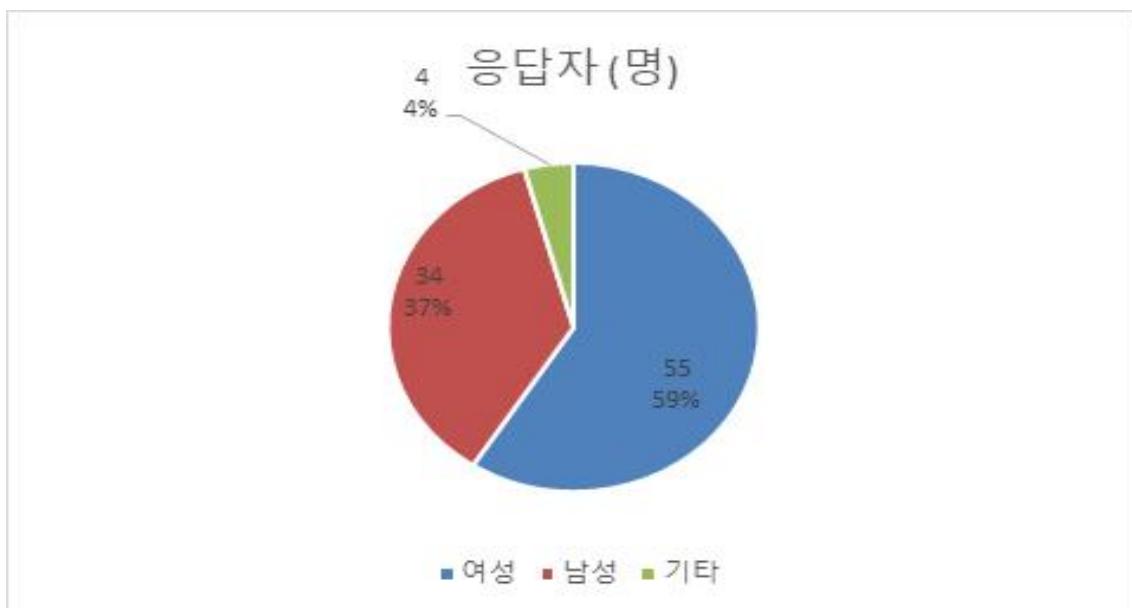


그림 3-15 근로계약서 미작성 응답자 성별 분류

- 응답자들의 고용형태별 분류를 보면 정규직이 34%, 계약직이 22% 등으로 나타남. 성별, 연령대별 고용형태를 보면 응답자들이 연령대별 특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음.



그림 3-16 고용형태별 분류

- 성별 분류로 보면 여성들은 정규직 35%, 계약직 23%,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시간제/파트타임등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7 여성 고용형태별 분류

- 응답자 중 남성은 정규직이 34%, 계약직이 19%, 비정규직 13%, 특수고용 13%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8 남성 고용형태별 분류

- 응답자들의 연령별 고용형태를 보면 20대는 시간제/파트타임노동자들이 가장 많았음. 그 뒤에 정규직, 계약직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9 20대 고용형태별 분류

- 30대는 정규직이 46%, 계약직으로 20%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0 30대 고용형태별 분류

- 응답자들의 40대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39%, 계약직이 18%, 특수고용 15%로 응답함.



그림 3-21 40대 고용형태별 분류

- 50대 응답자들은 정규직이 33%, 계약직이 24%로 나타남.



그림 3-22 50대 고용형태별 분류

- 60대의 경우 계약직이 37%로 가장 많았고, 비정규직이 25%로 응답하였음.



그림 3-23 60대 이상의 고용형태별 분류

### 3. 노동실태

-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관한 질문에 고용보험은 103명, 산재보험은 110명, 건강보험은 95명, 국민연금은 109명이 미가입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소규모사업장,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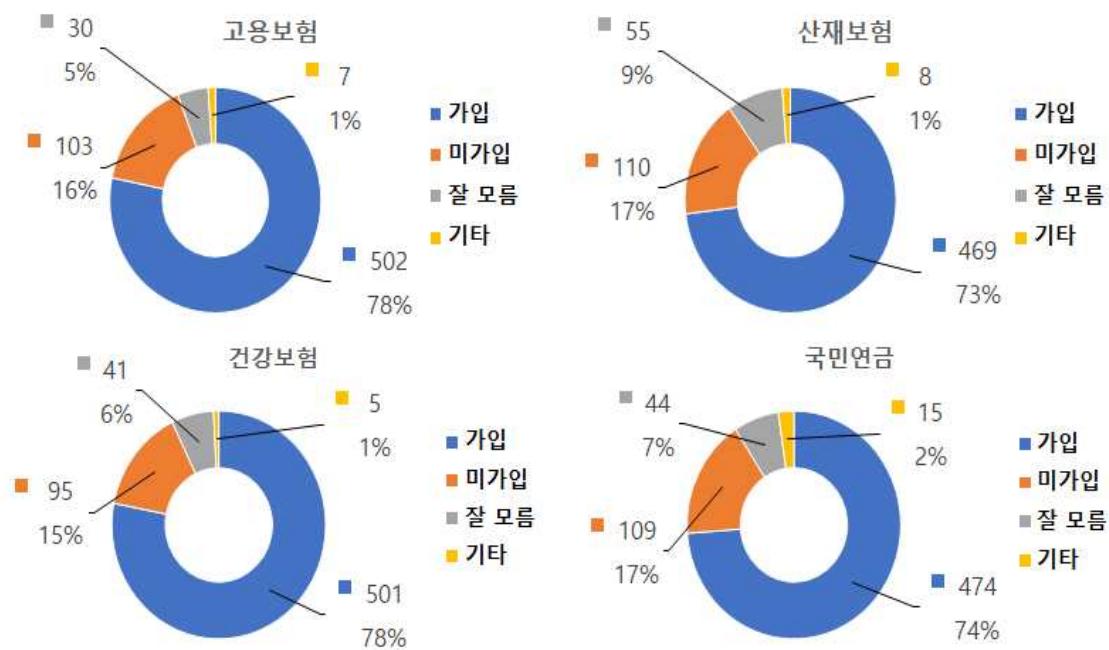


그림 3-24 응답자 보험별 가입 여부 (단위 : 명, %)

- 월 급여에 대한 응답에는 41%가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이 30%, 100만 원 미만도 16%, 300만 원 이상은 13%라고 응답함.
- 주 40시간 이상-52시간 미만 노동자의 임금 비교를 해 보면 100만 원 이상-200만 원 이하가 75명,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이 184명, 300만 원 이상은 54명이라고 응답함.
- 고용노동부 발표 2020년 12월 현재 노동자 평균임금이 320만 원인데,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 대부분은 20년 평균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저임금노동자들임.

## 월평균 임금(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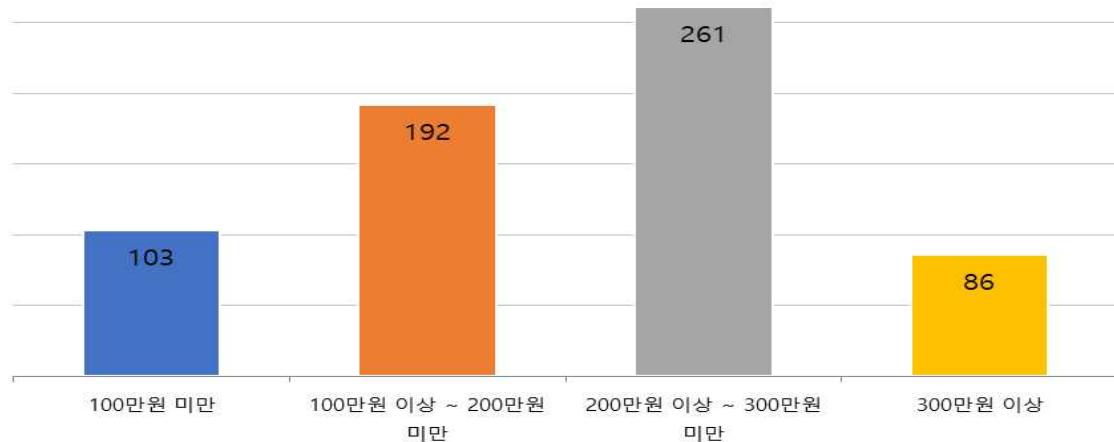


그림 3-25 응답자들의 월평균 임금

- 성별 월평균 급여를 보면 여성들은 200만 원 이상-300만 원 이하가 176명, 100만 원 이상-200만 원 이하는 148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남성은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이 85명, 300만 원 이상이 56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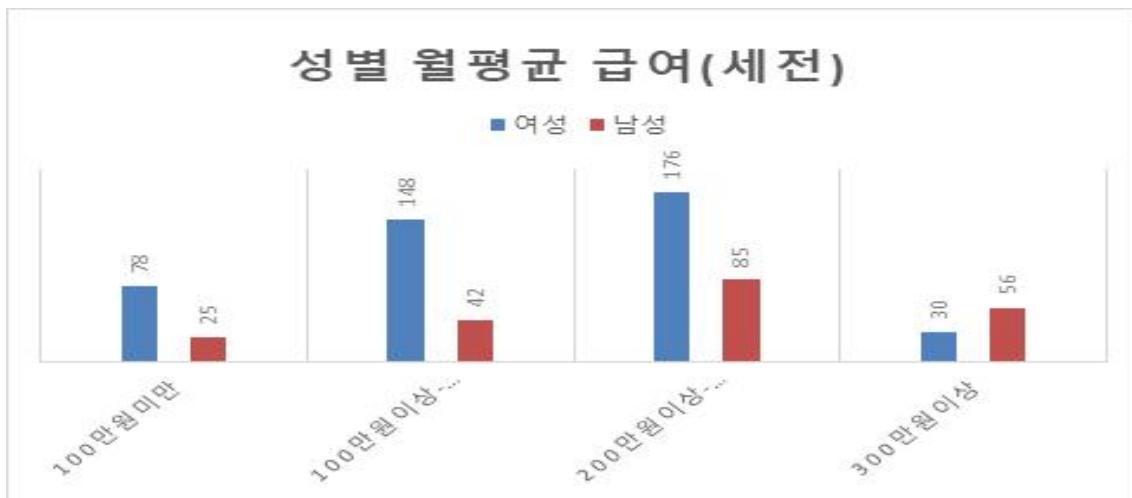


그림 3-26 응답자 성별 월평균 급여

- 가구원 중 본인소득 비율에 관한 질문에는 25~50%가 33%, 25% 이하는 22%, 100%도 21%나 되었으며, 50~75%는 17%, 75~99%는 7% 정도 됨.

## 가구원 중 본인 소득 비율(%)



그림 3-27 응답자 가구원 중 본인 소득 비율

- 본인 소득이 100%라고 응답한 여성은 모두 62명으로 100만 원 미만 4명,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이 25명,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이 29명, 300만 원 이상은 3명이라고 응답함. 하지만 이 여성 중 200만 원 미만의 소득 100%인 노동자 중 가구원 수가 1인은 12명, 2인은 10명, 3인은 3명, 4인은 4명, 5인 이상도 1명으로 응답해. 이 여성 노동자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는 저소득 노동자들임.
- 남성 노동자 중 200만 원 미만으로 가구원 100%의 소득이라고 응답한 노동자들은 대부분은 1인 가구원이며, 2인 가족이 6명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의 가구지출항목을 보면 가장 큰 3가지를 선택한 결과는 가장 큰 지출은 식비였으며, 그 뒤를 저축과 교육비였으며. 부채상환비가 높다고 응답한 사람도 356명이 됨.

### 가구 지출 항목(가장 큰 3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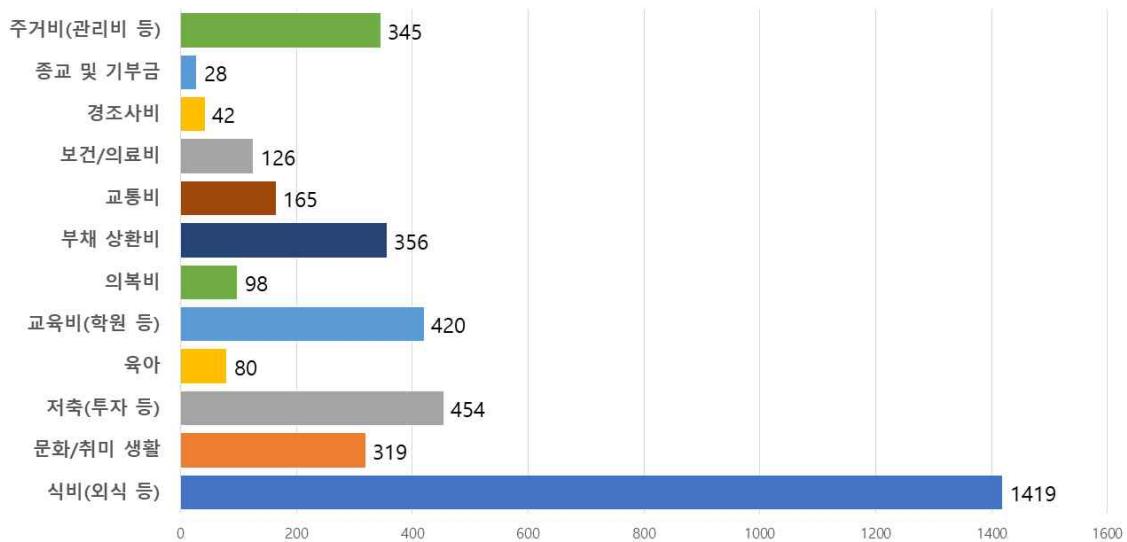


그림 3-28 응답자 가구지출 항목

- 직장 내에서 부당한 사례를 경험했는가에 관한 질문에는 47%가 있다라고 응답하여 매우 높은 부당사례 경험을 알 수 있음. 노동권의 보호로부터 매우 취약한 것을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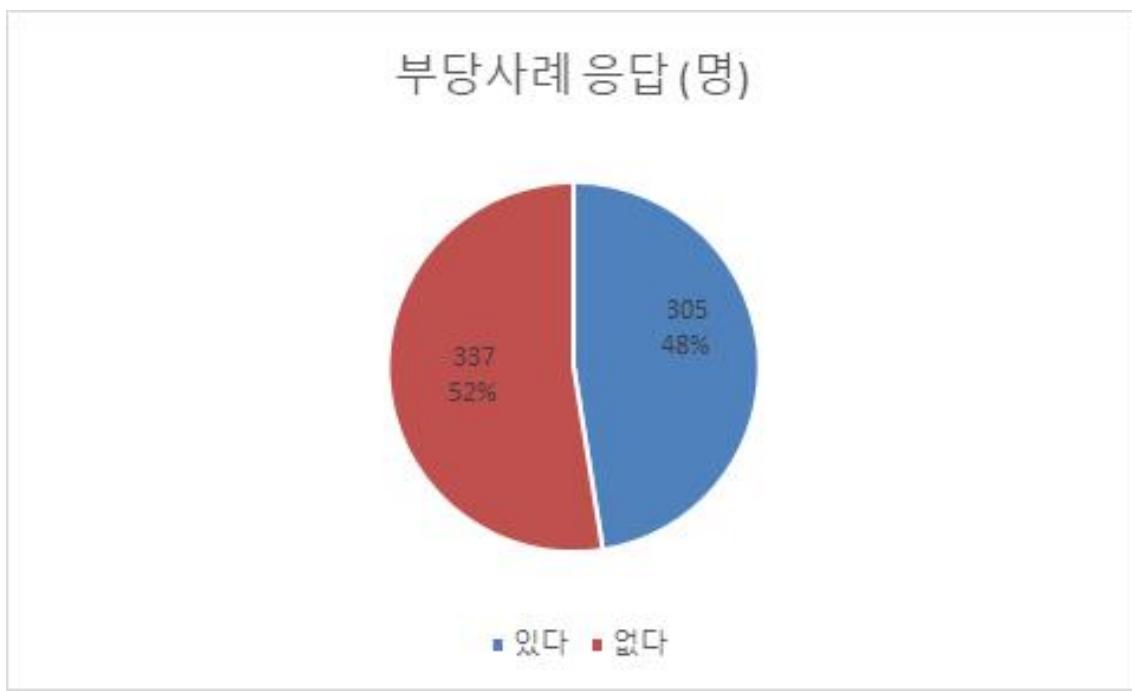


그림 3-29 응답자 부당노동사례

- 부당사례의 경우 가장 많은 사례는 업무상괴롭힘(갑질) 이었으며, 다음으로 계약 외의 일을 지시받았거나, 폭언 등의 피해를 받음.

### 부당한 사례(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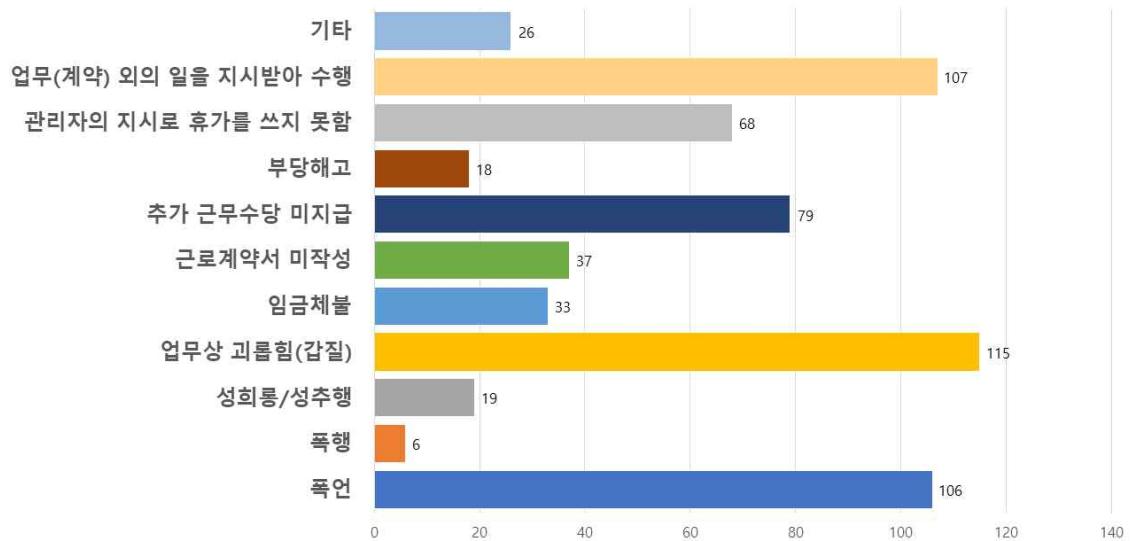


그림 3-30 응답자 부당 노동 사례

- 부당한 사례 경험을 물었을 때, 성별 응답을 보면 남성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리나, 소규모사업장, 비정규직 남성노동자들의 부당사례가 높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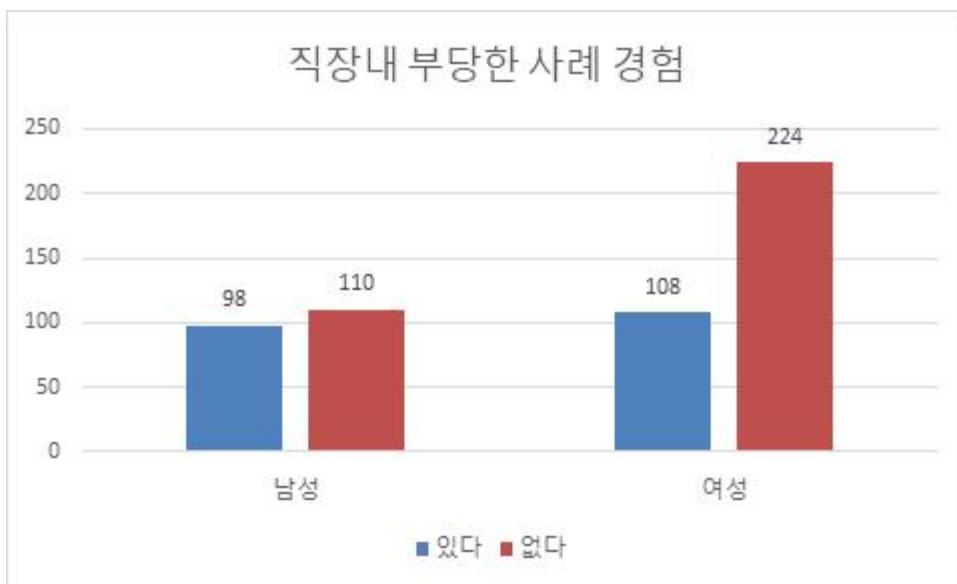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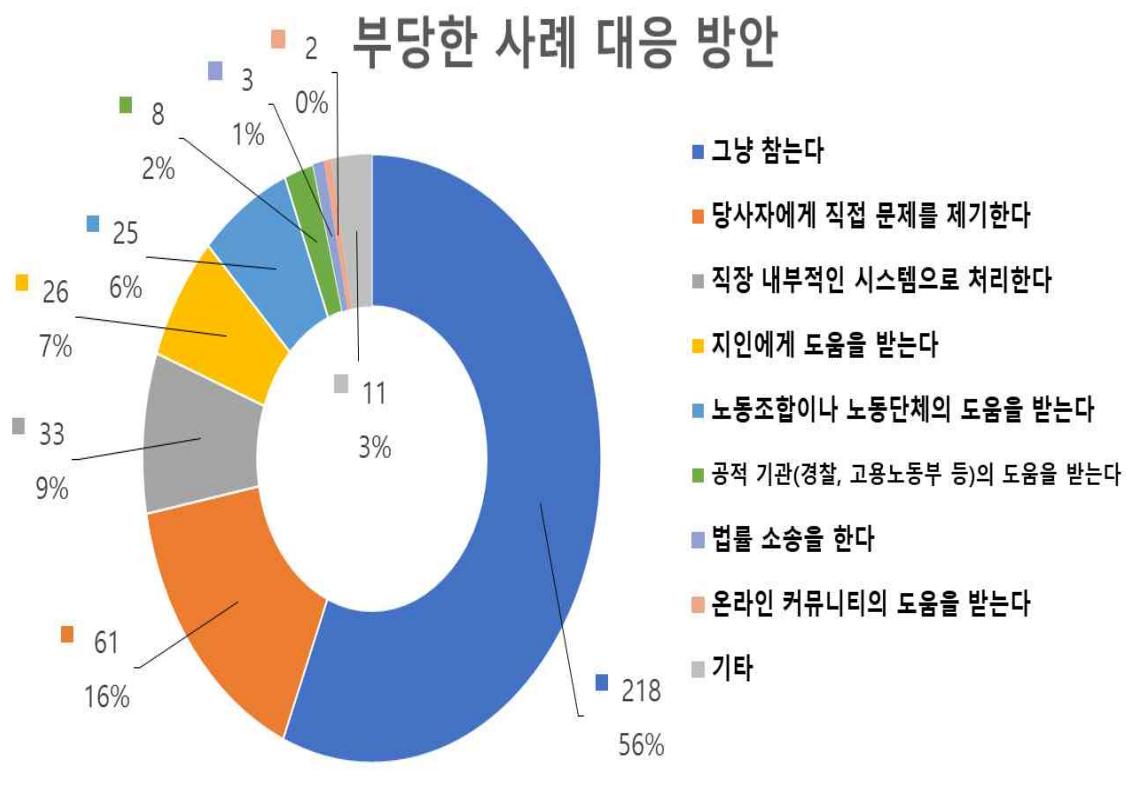


그림 3-31 직장 내 부당사례 경험 성별 분류

- 부당한 사례를 당했을 때 대응에 관한 질문에는 56%가 그냥 참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직장 내부 시스템을 이용이 9%, 공적 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2%, 노동조합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6%로 나타났음.



- 직장 내 실행 중인 복지제도에 관한 질문에는 252명이 명절수당을 받고 있었고, 243명이 점심식대를 208명은 명절선물 정도 받고 있었음.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 하는 노동자들이 316명이 되는데, 이들 노동자 중 73명은 점심식대 지급도 못 받는 상황임.

## 직장 내 실행 중인 복지제도(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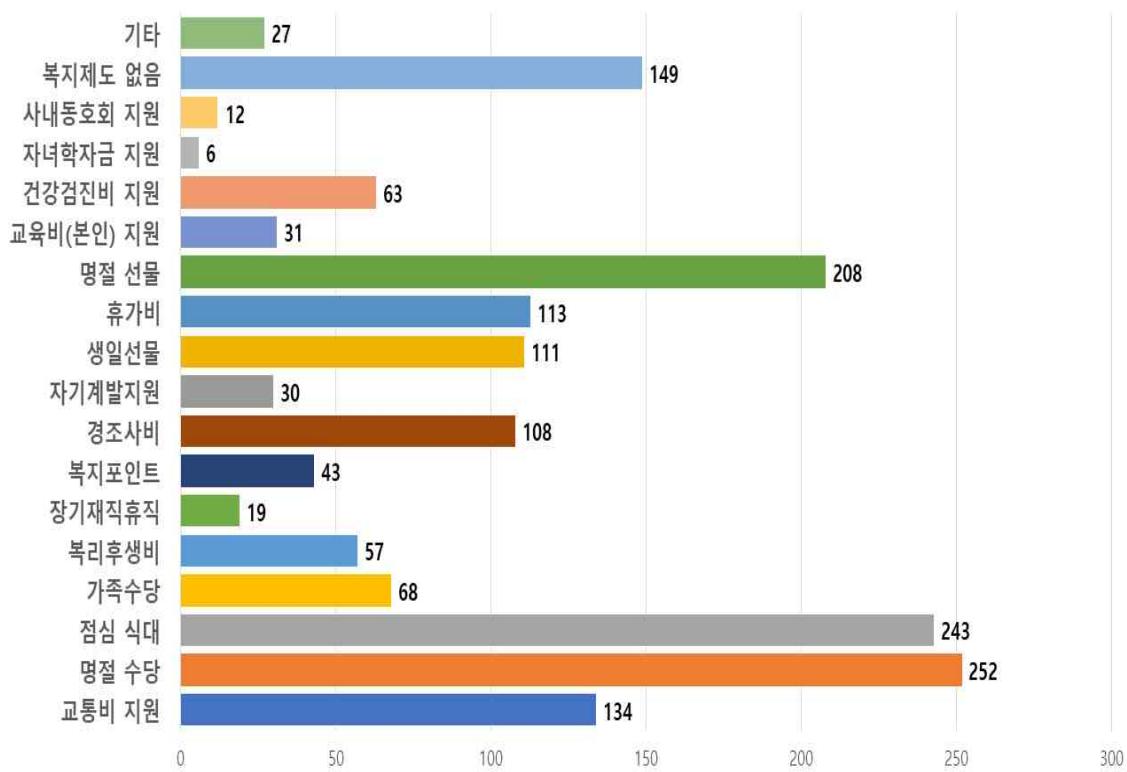


그림 3-33 직장 내 복지제도

(단위 : 명)

## 4. 노동환경에 대한 만족도

- 직장 및 업무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임금에 대한 불만족이 215명, 직업으로서 장기적 전망에 대한 불만족이 203명, 고용 형태에 대한 불만족이 188명 등으로 불만족도 가장 높은 순으로 나타남.

### 직장 및 업무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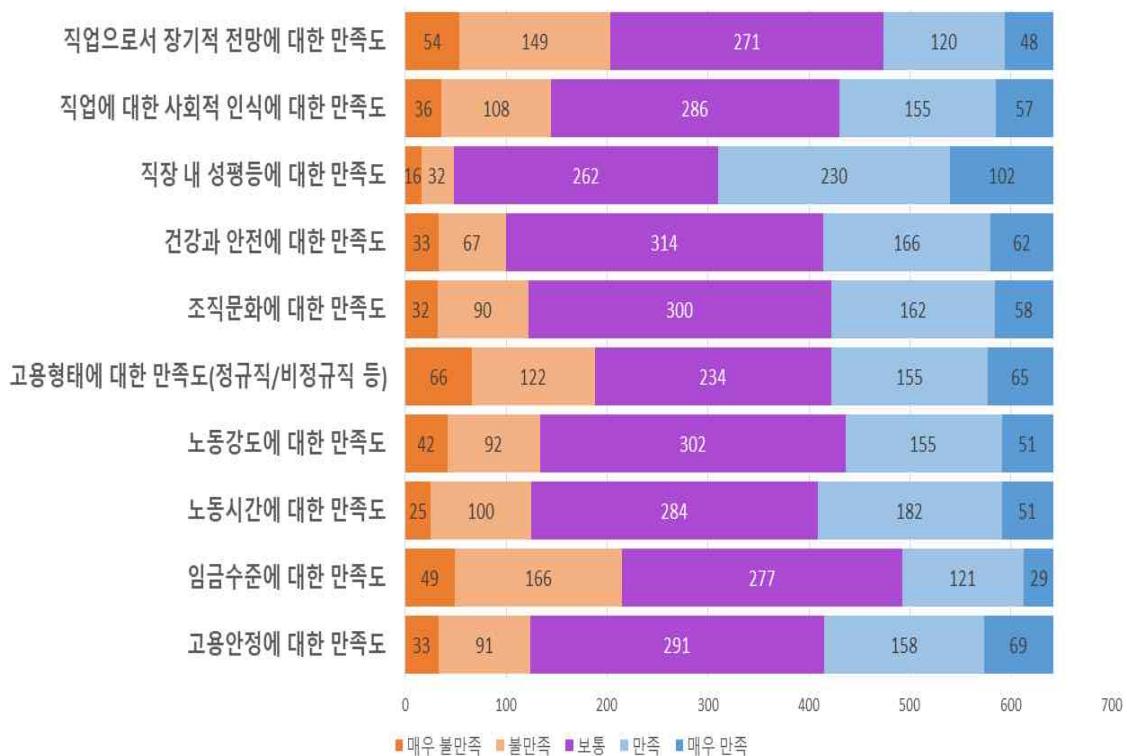


그림 3-34 직장 및 업무 만족도 (단위 : 명)

- 직종별 직장 및 업무 만족도에 대한 응답에서는 상담직 노동자들의 직장 및 업무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활동가분들은 임금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프리랜서/알바 노동자들은 임금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고용형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현장/생산직은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도와 고용형태, 건강과 안전, 직업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음.
- 의료직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지만 그중 임금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 영업/서비스직은 임금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직업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도도 낮음. 고용형태에 대한 만족도도 낮음.
- 연구/개발직은 임금과 노동강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사회서비스직과 사무직은 임금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음.
- 돌봄노동직은 임금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노동강도와 직업의 사회적인식에 대한 만족도에서 매우 낮음.
- 경비/관리직 노동자들은 임금에 대한 만족도도 낮지만, 직업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았으며, 고용형태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낮게 나타남.

## 직종별 직장 및 업무 만족도

전체	3.22	2.87	3.21	3.13	3.05	3.19	3.24	3.58	3.14
활동가	3.24	2.67	3.10	2.86	3.62	3.76	3.33	4.19	3.19
프리랜서/알바	3.28	3.19	3.41	3.36	3.22	3.45	3.41	3.67	3.38
특수고용직	2.96	2.92	3.21	3.21	2.79	3.19	3.24	3.47	3.20
현장/생산직	3.03	2.64	3.03	3.00	2.78	3.00	2.92	3.31	2.92
의료직	3.65	3.06	3.18	3.38	3.85	3.62	3.53	3.88	3.59
영업/서비스직	3.19	2.91	3.28	3.09	3.02	3.22	3.13	3.61	3.06
연구/개발직	3.29	2.79	3.18	2.93	3.11	3.18	3.36	3.54	3.64
상담직	2.78	2.32	3.17	2.90	2.07	2.88	3.02	3.73	2.51
사회서비스직	3.33	2.98	3.14	3.16	3.23	3.09	3.33	3.44	3.35
사무직	3.35	2.94	3.27	3.19	3.24	3.17	3.40	3.58	3.27
돌봄노동직	3.26	2.75	3.09	2.84	3.07	3.07	3.03	3.64	2.88
경비/관리직	3.25	2.80	3.16	3.27	2.75	2.98	3.16	3.18	2.68

■ 고용안정 ■ 임금수준 ■ 노동시간 ■ 노동강도 ■ 고용형태 ■ 조직문화 ■ 건강과 안전 ■ 성평등 ■ 직업의 사회적 인식

그림 3-35 직종별 직장 및 업무 만족도

- 응답자들의 희망복지제도에 대한 요구는 교통비 지원이 220명, 휴가비 205명, 명절수당 175명, 점심식대 169명 등으로 나타남.

### 희망 복지제도(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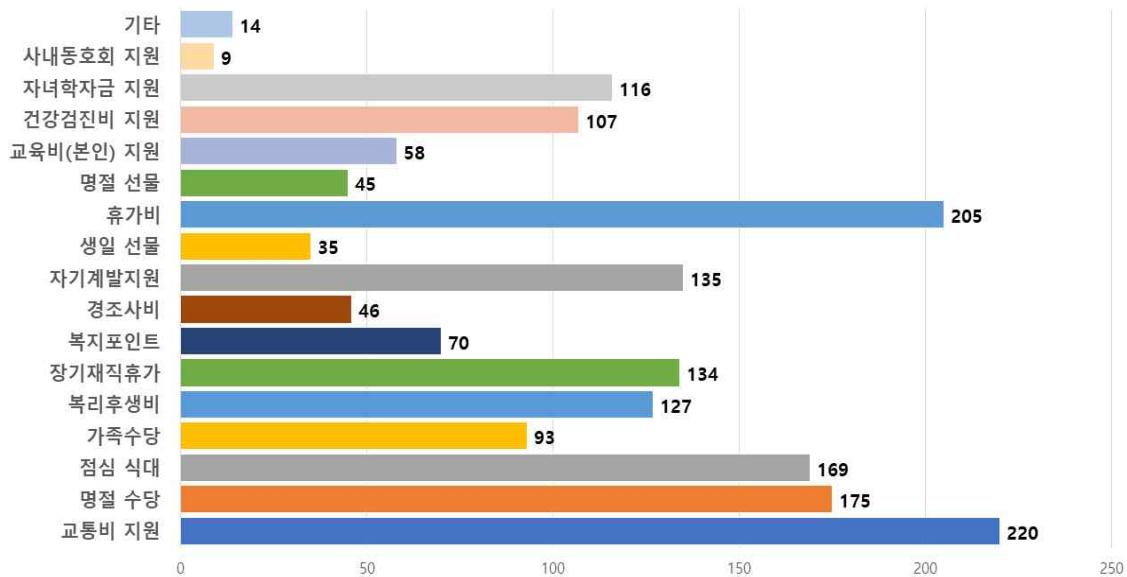


그림 3-36 응답자 희망 복지제도

- 현재 직장에서 일을 지속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는 494명이 수입이 필요해서라고 응답 함. 76.9%의 응답임. 다음으로 일 자체에 대한 보람과 사명감이 152명(23.7%) 응답. 근로조건이 만족해서가 117명(18.2%) 응답 순으로 조사됨.

### 현재 직장에서 일을 지속하는 이유(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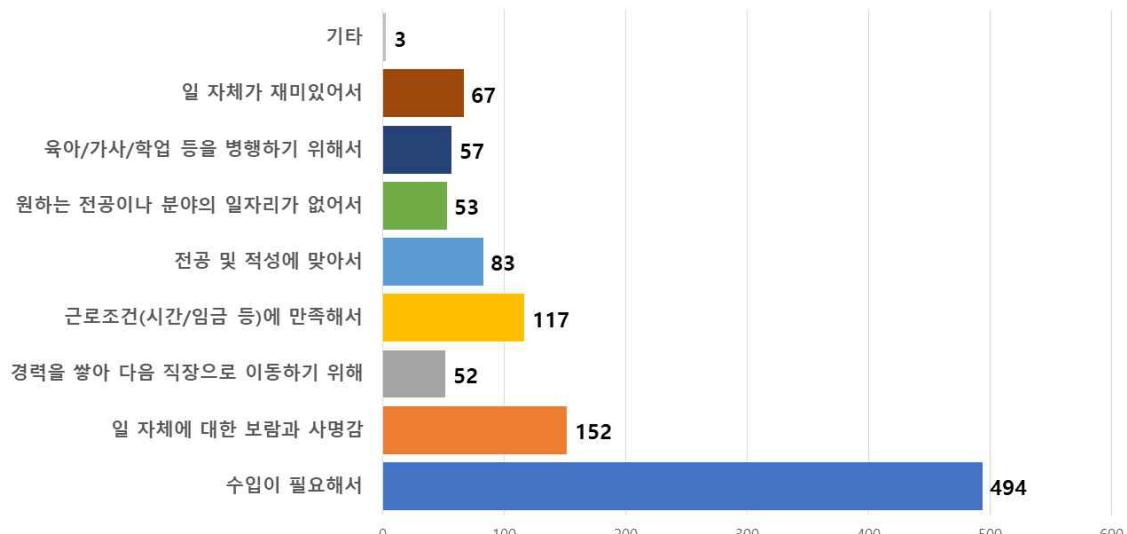


그림 3-37 응답자 직장에서 일을 지속하는 이유

- 현 직장에 대한 이직 의사 여부에는 52%가 이직 의사가 있으므로 응답함.

### 현 직장 이직 의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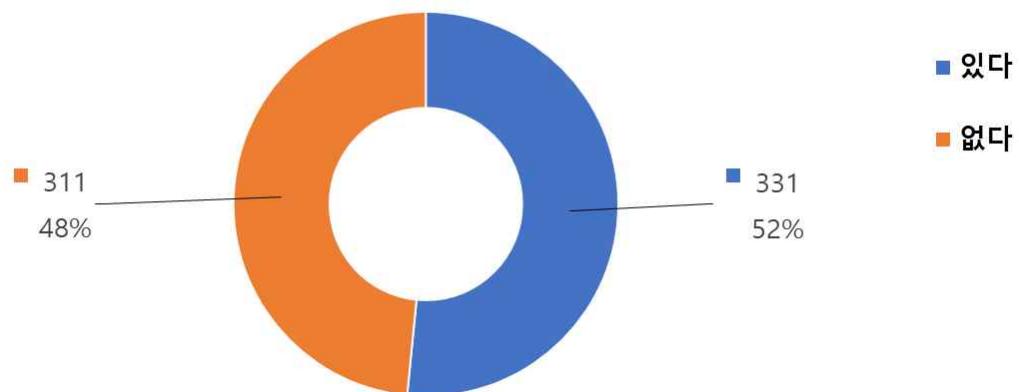


그림 3-38 응답자 직장 이직 의사

- 성별 이직 의사에 대해서는 남성, 여성 차이 없이 모두 이직 의사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9 응답자 성별 이직 의사

- 이직하시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낮은 임금이 825.7%였으며, 직업으로서의 장기적인 전망이 불투명이 21.8%, 불안정한 고용이 21.1% 업무환경이 열악함이 10.6% 등으로 응답함.

### 이직하려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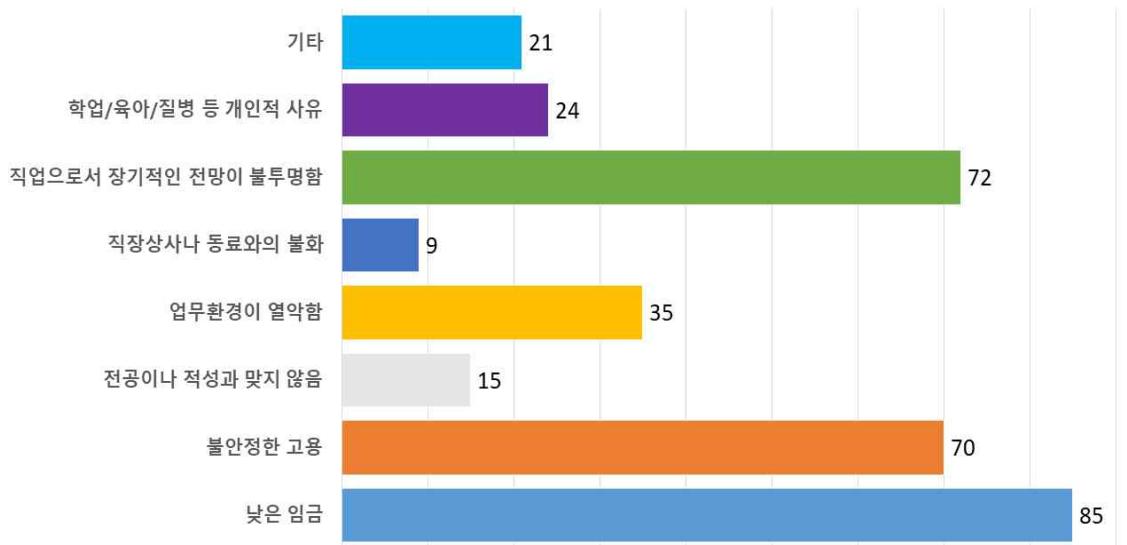


그림 3-40 이직 응답자들의 이유

## 5. 대전광역시 정책 제안

-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대전광역시의 정책에 대한 응답에는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생활임금 적용 범위 확대, 근로기준법 등 위반에 대한 신고 센터 운영이 등의 순으로 응답함.

##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대전시의 정책 우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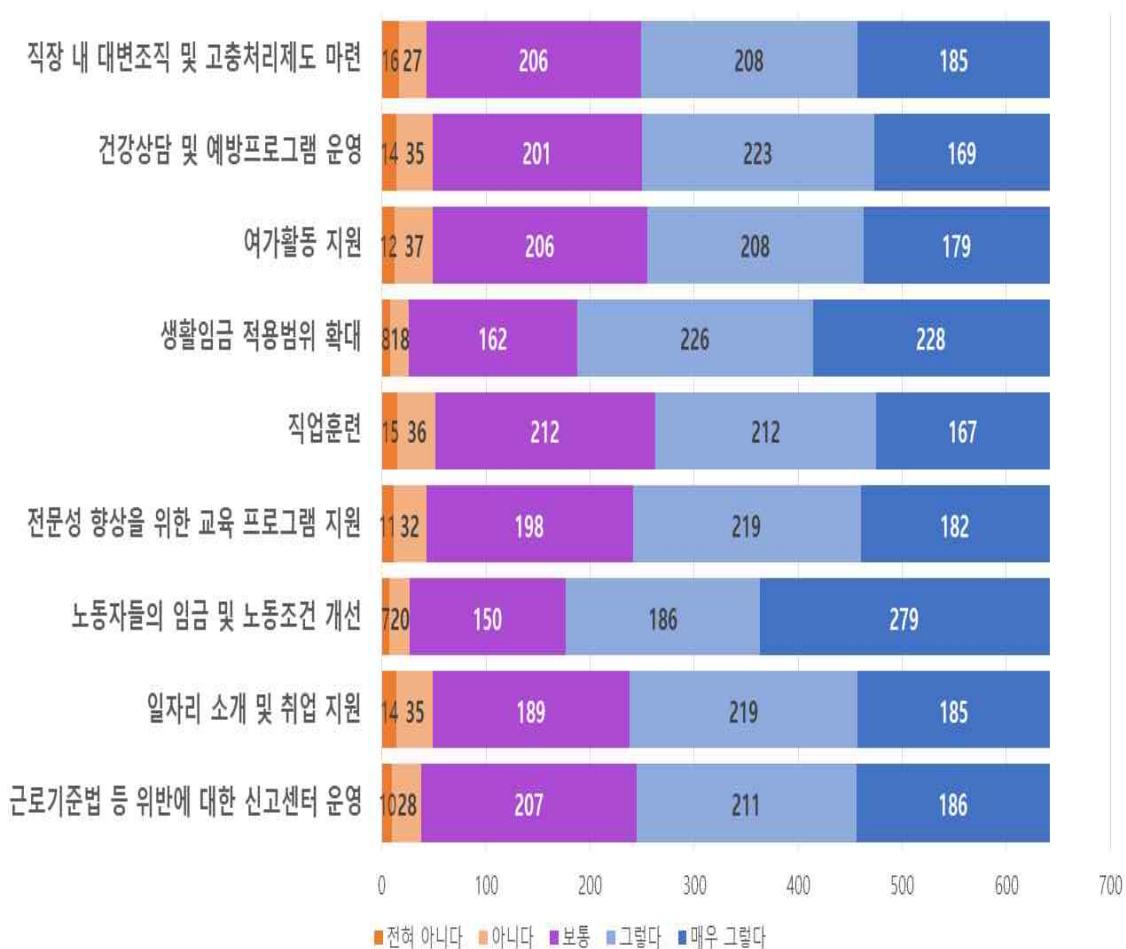


그림 3-41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전시 정책 우선 선호도

- 돌봄노동직에서는 생활임금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전문교육프로그램지원,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센터 운영, 건강 및 예방프로그램, 여가활동 지원 등에 대한 응답들이 비슷하게 나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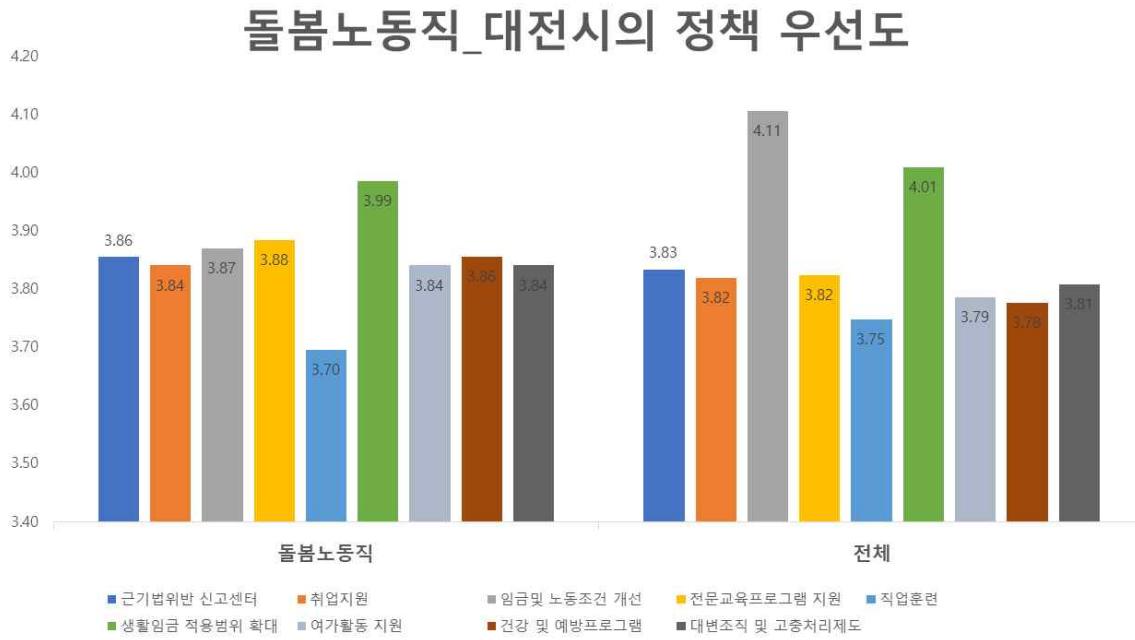


그림 3-42 돌봄노동직 대전시 정책 우선도

- 의료직 노동자들의 응답은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직업훈련, 생활임금적용범위 확대와 대변조직 및 고충처리제도, 근로기준법 위반신고센터 운영 등의 답변순으로 높게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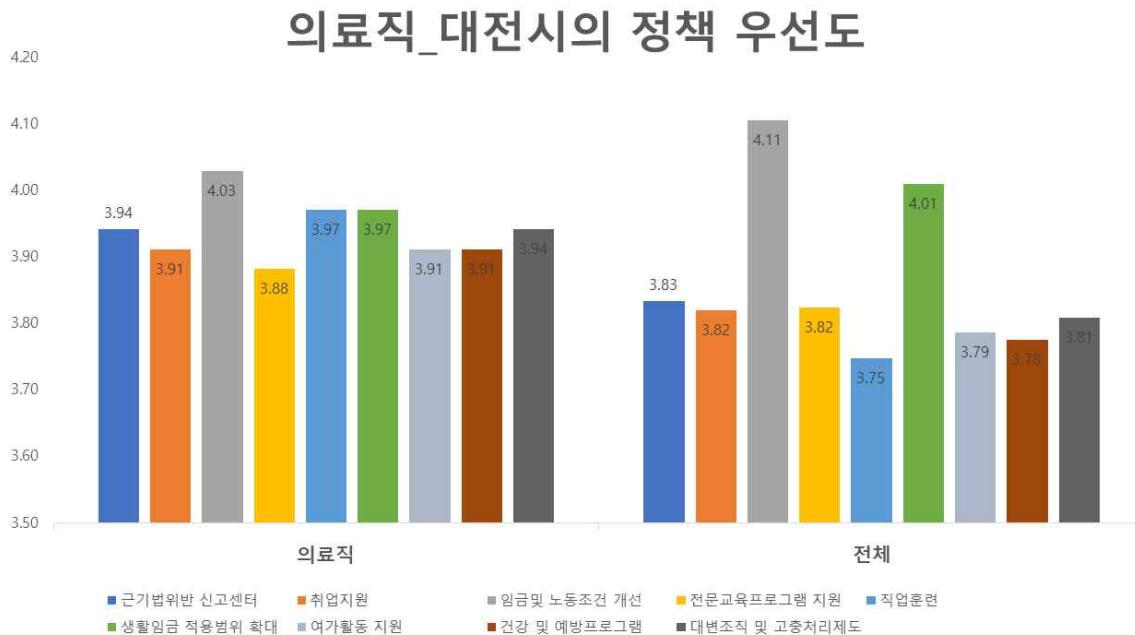


그림 3-43 의료직 대전시 정책 우선도

-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응답에서는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의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생활임금 적용확대가 그다음으로 응답이 많았으며, 전문교육프로그램지원, 여가활동지원, 취업지원등의 응답 순으로 대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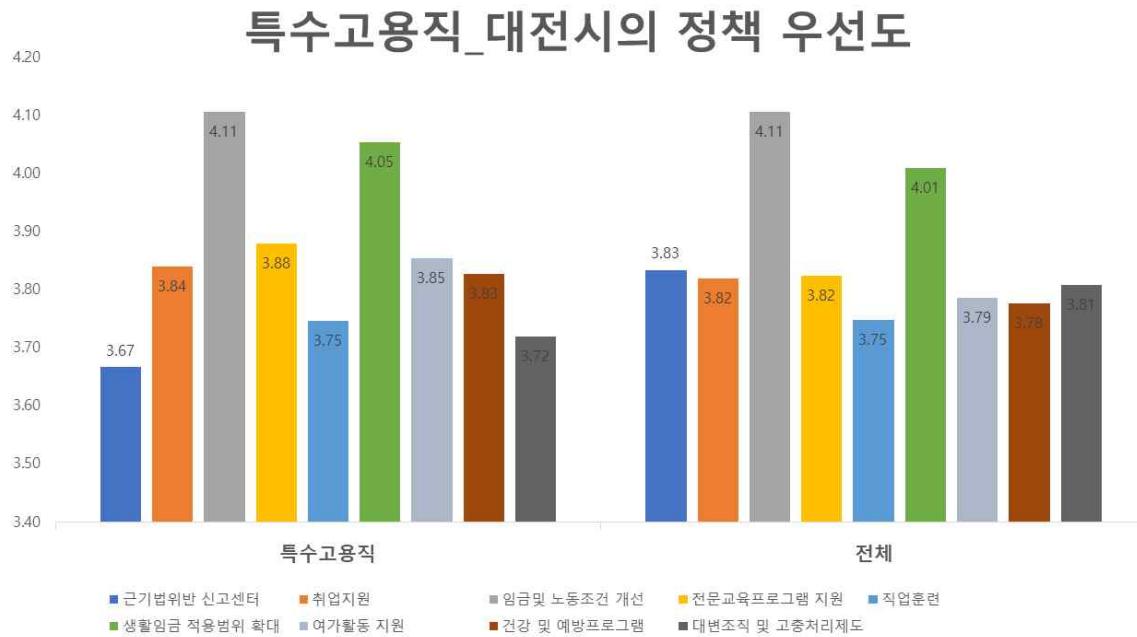


그림 3-44 특수고용직 대전시 정책 우선도

- 프리랜서/알바 노동자들의 응답에서는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취업지원과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 응답 순으로 대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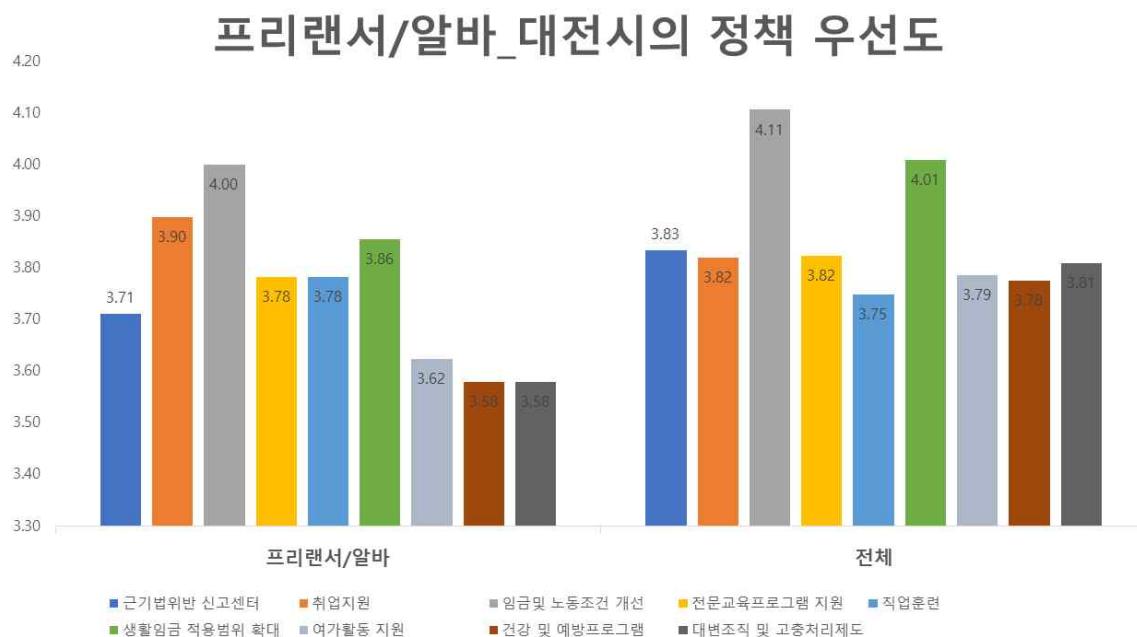


그림 3-45 프리랜서/알바 대전시 정책 우선도

-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에 관한 질문에는 역량강화 강좌에 대한 응답이 높았고, 다음으로 재취업 훈련교육, 노동인권 교육 순으로 많이 응답함.

## 필요한 교육(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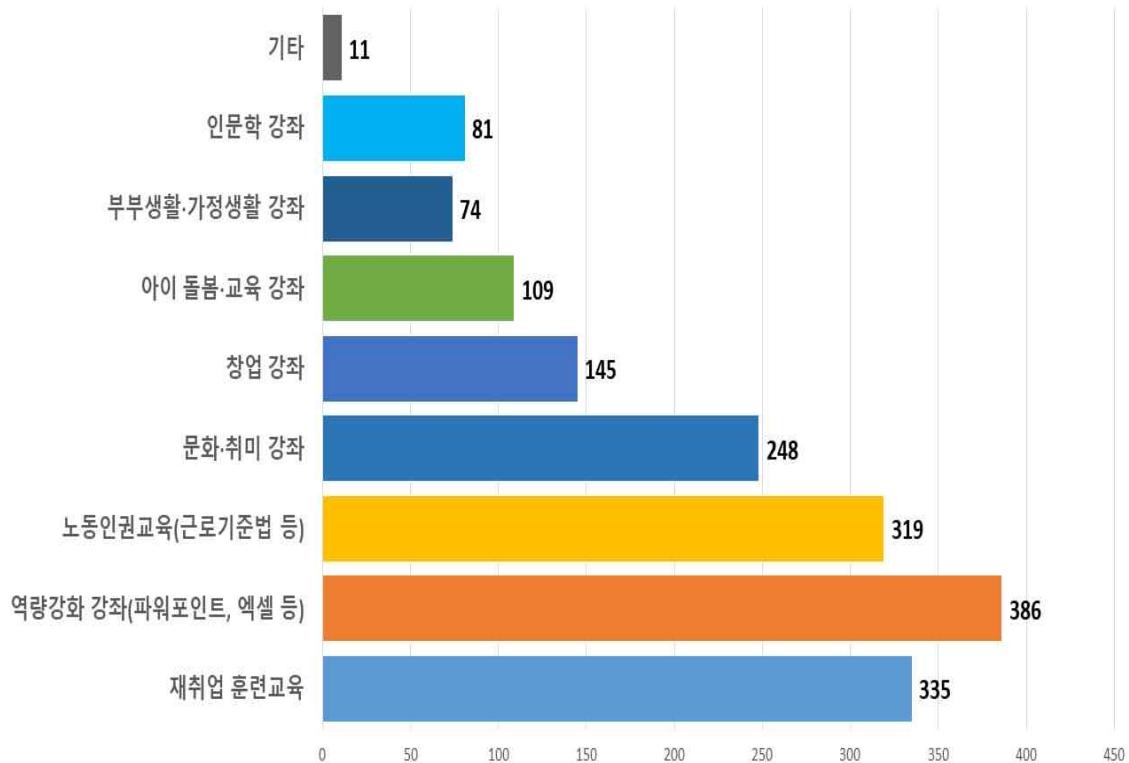


그림 3-46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 6. 이해대변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과 참여

- 이해대변 네트워크 필요성에 대해서는 81%의 노동자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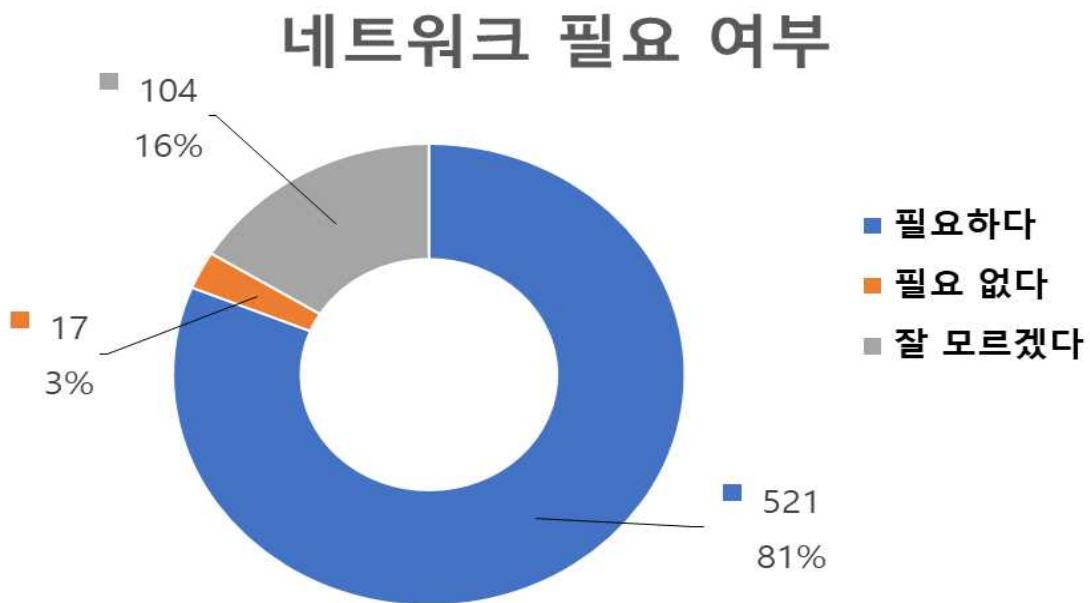


그림 3-47 응답자들의 네트워크 필요 여부

- 직종별로 보면 현장/생산직 노동자들이 가장 높았으며, 상담직, 돌봄직, 연구/개발직 순으로 높게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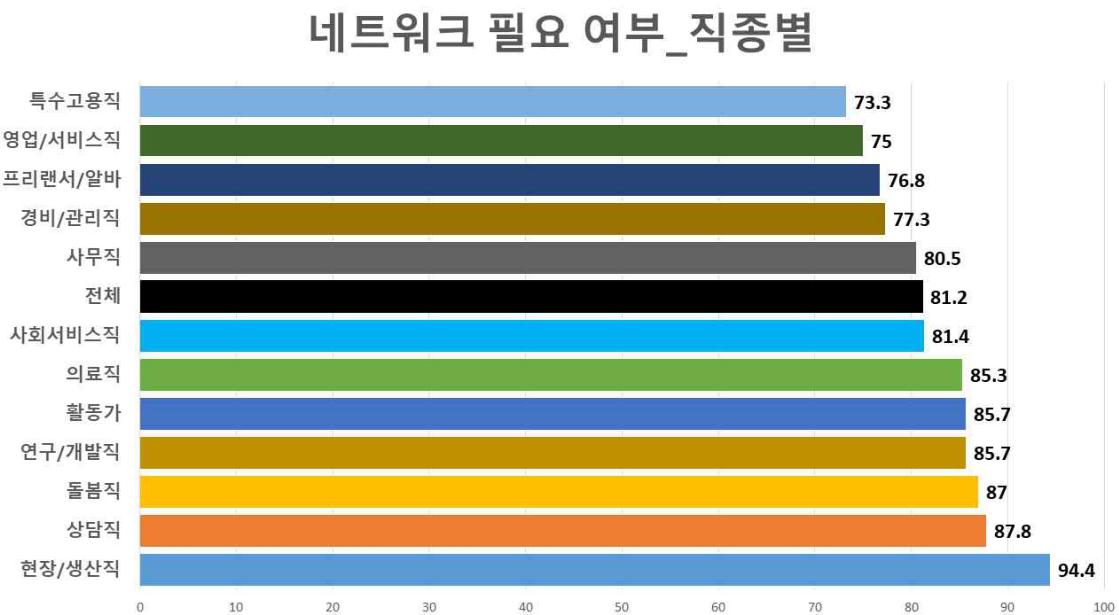


그림 3-48 직종별 네트워크 필요 여부

- 이해대변 네트워크 참여 의사에 대해서는 22% 139명의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또한 43%는 여건이 되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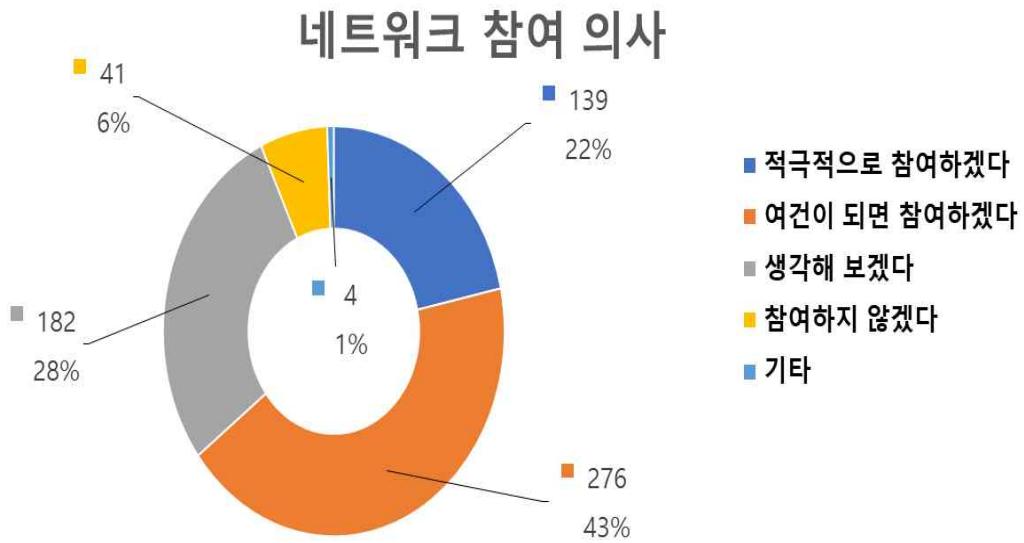


그림 3-49 응답자들의 네트워크 참여 의사

---

## IV. 소규모사업장,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 - 설문조사 분석

#### 1. 소규모사업장,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제도 검토

- 지방자치단체들은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조례들을 제정하고 있음.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조례들이 전국에도 많이 제정되고 있음. 대전광역시도 플랫폼, 산업안전, 노동이사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조례 등이 추가로 제정됨.

8개 특광역시 및 경기도 노동 관련 주요 조례 현황(2020년 10월 기준)

	노동정책 유관 조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1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관련 조례(노동기본) <sup>1)</sup>	○	○	○		○	○	○		○
2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	○	○	○	○	○			○
3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				○			○
4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5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sup>2)</sup>	○	○	○			○			○
6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혹은 권리보호 지원 조례	○	○	○						○
7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	○	○	○	○	○	○	○
8	생활임금 조례	○	○	○	○		○		○	○
9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	○	○	○
10	노사관계 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		○			○
11	비정규직, 특고 등 유급병가 관련 조례	○								
12	프리랜서 권리보호 관련 조례	○	○		○		○			○
13	플랫폼노동 관련 조례 <sup>3)</sup>									○
14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	○							○
15	노동안전보건 관련 조례 <sup>4)</sup>	○								○
16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례	○								
17	성별임금공시제 관련 조례	○								
18	기후환경과 노동 관련 조례 <sup>5)</sup>									

표 4-1 8개 특광역시 및 경기도 노동관련 주요 조례 현황

지역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시기
강원	강원도	강원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9. 5.10
	원주시	원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9. 10.18.
경남	경상남도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9. 9.26.
	창원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8. 3.30.
경기	경기도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2016. 9.29.
	고양시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9. 2. 1
	성남시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2018. 4.30.
	수원시	수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7. 7.17.
	안양시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2017. 1. 5.
	김포시	김포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2017. 4.18.
	의정부시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2017. 9.29.
	평택시	평택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2019. 4.10
	남양주시	남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9.10.10.
	부천시	부천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조성 등에 관한 조례	2019.12.23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2019. 3. 8.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감정근로자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2019. 3.13.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	2019. 8.12.
울산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20. 6.18
광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2016. 7. 1.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9. 12. 26.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20. 2. 25.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20. 7. 1.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2020. 5. 29.
대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9. 7.10.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9.10.10.
대전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2017.10.18.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감정노동 업무 종사 직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9. 8.14.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20. 6.19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8. 5.23.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8.12.24.

- 1)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조례 2022. 4. 15 제정  
 2) 대전광역시 노동이사제 2021. 2. 19일 제정  
 3) 대전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2022. 4. 15일 제정  
 4)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조례는 2021.10.1. 제정  
 5) 기후환경 변화와 노동 문제 관련 정책은 김종진 경향신문 칼럼(2021.3.26.)을 참조할 것.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260300075&code=99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260300075&code=990100)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6. 1. 7.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6.10.13.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9. 4.30.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9. 8.14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9. 11.13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20. 1. 2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9.11. 8
충남	아산시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9. 3.15.
	당진시	당진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	2020. 6. 26.
	천안시	천안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9.12.27
전북	전라북도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2017.11.17.
	전주시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2017. 3.30.
전남	여수시	여수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20. 7. 6.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20. 1.13

표 4-2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감정노동보호 조치 현황 (2020년 8월 기준)

- 생활임금과 노사민정협의회 조례들도 전국적으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대전시의 경우 생활임금 수준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낮은 상황임.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및 각 위원회
서울	노사민정협의회,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감정노동조사자권리보호위원회, 생활임금위원회,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노동정책 담당부서), 일자리위원회(일자리정책담당부서)
부산	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위원회, 노동권익위원회
대구	노사민정협의회
인천	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광주	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노동권익보호위원회,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
대전	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위원회
울산	화백회의(노사민정)
세종	노사민정협의회
경기	노사민정협의회, 노동정책자문위원회(21.3), 생활임금위원회,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노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상반기 예정)
강원	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위원회
충북	노사민정협의회
충남	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위원회, 노동정책협의회
전북	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위원회
전남	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위원회
경북	노사민정협의회
경남	노사민정협의회,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제주	노사민정협의회

표 4-3 지방정부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 및 위원회 설립 현황 (2020년)

지역	생활임금 금액							적용 대상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시 소속	출자 출연	민간 위탁	공사 용역	하수급인
평균	6,917	7,248	7,726	8,777	9,623	10,112	<b>9,946</b>					
서울	6,687	7,145	8,197	9,211	10,048	10,523	10,702	○	○	○	○	○
부산	-	-	-	8,446	9,894	10,186	10,341	○	○	○		
인천	-	-	6,880	8,600	9,600	10,000	10,150	○	○			
광주	7,254	7,839	8,410	8,840	10,090	10,353	10,520	○	○	○		
대전	-	7,055	7,630	9,036	9,600	10,050	10,202	○	○			
세종	-	7,170	7,540	7,920	8,530	9,378	10,017	○	○			
울산							8,720					
대구							8,720					
경기	6,810	7,030	7,910	8,900	10,000	10,364	10,540	○	○	○	○	
강원	-	-	7,539	8,568	9,011	10,010	10,252	○	○			
충남	-	-	7,764	8,935	9,700	10,050	10,220	○	○	○		
충북							8,720					
전북	-	-	7,700	8,600	9,200	10,050	10,251	○	○			
전남	-	7,248	7,688	9,370	10,000	10,380	10,473	○	○	○		
제주	-	-	8,420	8,900	9,700	10,000	10,150	○	○	○		
경북							8,720					
경남							10,380					

표 4-4 광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추이 (2015~2021, 단위: 원)

- 대전광역시는 '노동자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가 올해 4월 15일 조례가 제정됨. 이 조례에 근거해 올해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음. 올해 연구용역에 기초에 내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임.

지역	비전	목표	정책과제	정책 분야
서울 (2015)	노동존중 특별시, 서울	노동자권익보호	취약노동자권익보호	여성,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중소영 세사업장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기반구축	실태조사, 모니터링, 교육, 상담, 홍보
	차별없는 노동,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모범적 사용자 역할정립	고용의 질 개선	고용구조, 소득, 노동환경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구 축	노사관계, 지역사회협력, 행정기반
충남 (2016)	차별없는 노동,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노동권익존중	취약노동자권익보호	여성, 청소년, 어르신, 이주노동자, 장애인
			노동기본권 보장	교육, 상담, 안전한 노동환경
		노동 가치 실현	노동 존중 사용자	노사관계, 노동행정
			삶의 질 개선	고용안정, 생활안정, 균등대우
		노동환경 개선	고용환경 개선	노동시장 개선, 소득 불평등 해소, 영세사업장 개선
			사회적 협력	노사 갈등 해결, 지역사회 네트워크

광주 (2016)	노동을 생각하는 광주시	노동권리보호 기반구축	노동환경과 산업 실태조사 및 분석	노동환경조사등
			사회통합형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노동정책발굴	사회통합형일자리창출
		모범적사용자 모델정립	취약계층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권리보호 기반 체계구축	여성, 청년,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영세사업장 노동자, 취약계층
			산학민관협력 등 민간거버넌스체계 구축	산학민관협력
			노동존중문화확산등 노동인지적 노동행정문화구현	노동존중문화확산
경기 (2018)	노동과 함께 따뜻하고 복된 경기도	노동권익보호	노동권보호 인프라구축	근로행정모니터링, 노동교육, 노동상담, 노동홍보
			맞춤형노동권보호	여성, 청소년, 노인, 외국인, 장애인, 취약사업장 종사자
		맞춤형 노동권보호	질좋은 일자리창출, 확대 (환경조성)	고용구조개선, 비정규직 근로자 생활안정, 근로환경개선
			상생협력의 지원체계구축	굳건한 노사 협력, 거버넌스 행정기반, 관행제도 개선

표 4-5 서울, 경기, 광주, 충남 노동기본계획 비전, 목표, 과제 (1기 정책)

## 2.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한 대전광역시 정책제언

### 1)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증진을 위한 대전광역시 조례 정비

-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는 ’일하는 시민이란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하여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음. 이 조례는 특히 근로기준법 등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일하는 시민으로서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한 권리を持つ다고 하였으며, 시장은 일하는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도 모든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 필요함. 조례를 통해 노동권의 보호 및 증진사업 등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함.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에는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음.

- 또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의무적 책무로 제도 보완이 필요함.

## 2)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증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활성화

- 현재 대전시는 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위원회,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가 있음. 현재 위원회들의 활성화와 더불어,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산업재해예방 위원회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민관의 소통창구가 필요함.

## 3)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

노동인권 선진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필요함. 권리보호와 기본권보장을 위한 기반구축, 고용의 질 개선,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함.

### ①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반구축

- 실태조사, 모니터링 확대
  -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해야 함. 특히 주기별 실태조사를 통한 노동 인권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함.
  - 대전형 노동정책 발굴 필요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대전시 노동정책으로 적극적인 활용 필요함. 노동권익센터 실태조사 결과들이 사장되고 있음.
- 교육, 상담, 홍보 활동 활성화
  - 취약계층 노동자 기본권보장을 위한 교육, 상담, 홍보 활동을 보다 활성화해야 함. 특히 써포터즈단 운영, 노동법률지원, 노동존중 대전을 위한 시민인식개선 캠페인 활성화해야 함.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확대와 청년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필요함. 대전시 대학교와 연계된 청년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를 통해 예비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정책 필요.
- '노동존중주간' 선포 및 대시민 캠페인 활성화

- 노동이 존중되고, 존중 대전시를 만들기 위한 대전시의 의지를 보여주며, 선도적인 모범 사업주로서 대전시의 위상을 제고해야 함.

### ②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보호

중소영세사업장, 여성,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등 권리보호를 위해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필요
- 노동권익센터에서 2020년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이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민하던 대전시는 현재까지 설치운영하고 있지 못함. 특히 코로나19 이후 필수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대전시의 노동행정은 현장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 장기요양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기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이 시급함.
- 우리동네 노동인권 서포터즈 활동
- 단시간, 소규모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노동인권 홍보 및 노동법 준수여부 확인 및 안내 활동 등 노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을 일상적으로 전개할 필요 있음.
- 마을 노무사/노동권리보호관 지원제도
  -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하여 노무상담 컨설팅을 연계해, 노동관계법이 현장에서 준수되어 질 수 있도록 지원 필요. 또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컨설팅으로 노무관리의 제도화, 체계화 필요함.
  -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리보호, 상담, 권리구제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함.
-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비, 유급병가 지원
  - 서울은 2019년부터 유급병가비, 휴가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20년부터 지원하고 있음. 대전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는 있지만, 지원사업은 없는 상황임.

### ③ 노사 상생의 새로운 노사관계문화 형성 지원

- 사업주 대상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함. 노동법,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등 사업주, 관리자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확대를 통해 노사관계의 새로운 문화 형성을 지원해야 함. 대전시와 시산하 기관 관리자들부터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 해야 함.
- 노동환경 개선 지원

- 노동환경 개선, 고용구조 개선, 비정규직 생활안정 지원 등을 통해 질좋은 일자리확대와 창출을 위한 중소영세사업장 지원정책 확대 필요.
- 현대아울렛 피해 사망 노동자 중 2명이 휴게실에 쉬고 있던 용역노동자들로, 안전에 취약하거나, 휴게실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휴게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휴게실 환경개선 지원 필요.
- 취약계층 노동자 이해대변 조직화 지원
  -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조합 가입률은 100인 미만 2.9%, 30인 미만 0.2%에 불과함.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이해대변 조직화 지원 필요. 노동공제회, 마을유니온,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형태의 이해대변 조직화에 대한 사례발굴과 자조모임운영 지원 등 지원정책 마련
- 취약계층 노동자 복지지원 정책마련
  -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지원, 현재 장학금 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로복지기금의 운영과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 복지지원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대전형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용
  - 대전광역시의회에서는 10월 14일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의 전면 개정을 통해 '대전형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용 개정.
  - 산업재해 예방과 모니터링, 제도개선을 위해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 교육, 홍보 등에 안전보건지킴이 활동 필요.
  - 산업건설, 중소규모영세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함. 특히 용역, 파견 업체 노동자들을 위한 대안 모색 필요함.

## **참고문헌**

김종진 2021.4.8. '대전시 발표\_지방정부 노동정책 현황과 특징'

---

## V.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노동&생활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간담회

### - 심층 면접 분석

#### 1. 지역별 간담회 결과

##### 1) 지역별 간담회 진행

- 간담회 진행 (9월 5일~9월 27일)
  - 5개 구(구별 2회) 총 10회 진행
  - 총인원 110여 명 참석
- 간담회 진행 순서
  - 인사 소개
  - 실태조사 보고 및 질의응답
  - 부당사례
  - 대전시에 제안하고 싶은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제안
  - 노동존중주간 및 노동권익증진 한마당 홍보

##### 2) 간담회 결과

날짜	장소	구	참석현황
9월 5일	갈마2동 행정복지센터 2층	서구	13명
9월 6일	상상마을 협동조합	중구	10명
9월 14일	작당모의	동구	13명
9월 15일	상상마을 협동조합	중구	10명
9월 16일	한밭레츠	대덕구	13명
9월 19일	꾸러기도서관	대덕구	12명
9월 20일	나들공방	서구	12명
9월 20일	궁글림	유성구	12명
9월 23일	작당모의	동구	13명
9월 27일	궁글림	유성구	15명

간담회 결과표

### 3) 간담회 사진



1차 대덕구 간담회 22.09.16.



2차 대덕구 간담회 22.09.19.



1차 동구 간담회 22.09.14.



2차 동구 간담회 22.09.23.



1차 서구 간담회 22.09.05.



2차 서구 간담회 22.09.20.



1차 중구 간담회 22.09.06.



2차 중구 간담회 22.09.15.



1차 유성구 간담회 22.09.20.



2차 유성구 간담회 22.09.27.

## VI.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노동권익증진 한마당

### 1. 노동권익증진 한마당 개요

#### 1) 일시, 장소

- ◆ 일시 : 2022년 9월 29일 (목) 19:00~21:00
- ◆ 장소 : 강제징용 노동자상 광장(시청 북문 건너편)
- ◆ 대상 :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 2) 행사 계획

구 분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시간		
2022 대전시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노동 권익증진 한마당	19:00	19:10	10'	여는 문화공연 A	대전청년회 '놀'
	19:10	19:12	02'	개회	사회자
	19:13	19:15	03'	대표 인사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
	19:15	19:20	05'	축사1	대전시장
	19:20	19:25	05'	축사2	대전시의회 의장
	19:25	19:30	05'	축사3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장
	19:30	19:35	05'	실태조사 경과보고	정책국장
	19:35	19:40	05'	노동자 영상 시청	경비·콜센터 노동자, 대덕유니온
	19:40	20:35	55'	라운드테이블 토론	모두 함께
	20:35	20:40	05'	토론내용 정리	사회자
	20:40	20:45	05'	퍼포먼스	모두 함께
	20:45	20:50	05'	기념촬영	모두 함께
	20:50	21:00	10'	닫는 문화공연 B	이한별(국악인)
	21:00	21:02	02'	폐회	사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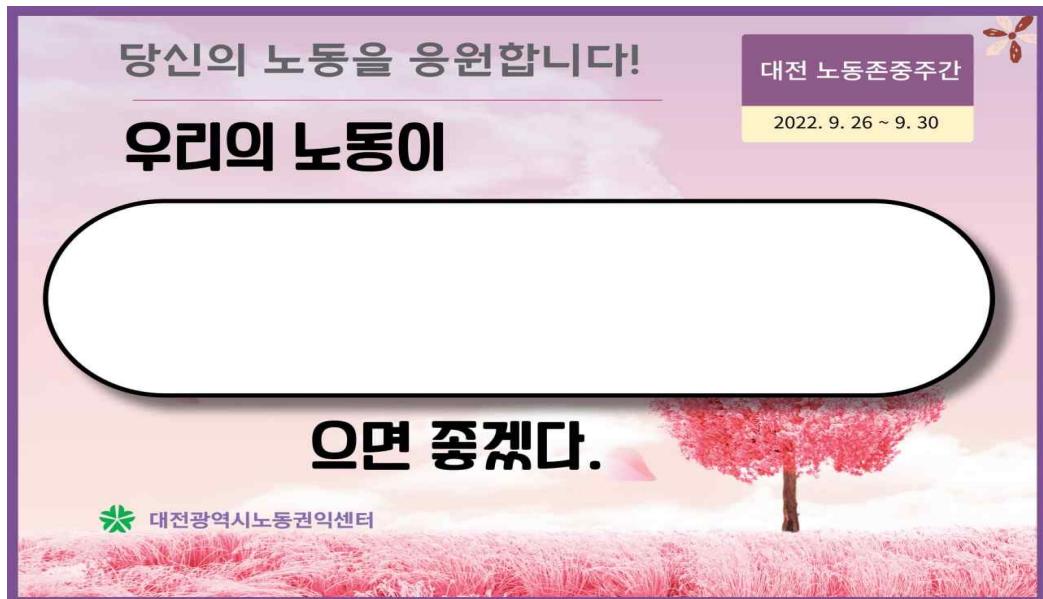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노동권익증진 한마당 행사계획표 22.09.27.

3) 행사 포스터



#### 4) 노동권익증진 한마당 결과

- 라운드테이블(직종별) 10개 직종 120여 명 참석
  - 강사(프리랜서)
  - 다양한 직종 노동자
  - 보육교사
  - 사무직 노동자
  - 상담직 노동자(콜센터)
  - 생활지원사
  - 서비스직 노동자
  - 아르바이트 노동자
  - 요양보호사
  - 활동가
- 미션
  - 직종별 꼭 필요한 권리를 주제로 토론하고 내용을 바탕으로 노랫말 바꾸기
  - 미션지 채우기 (우리의 노동이 \_\_\_\_\_ 했으면 좋겠다)



대전 노동존중주간 미션지

## 개똥벌레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아무리 일을 해도 남는게 없네

강사(프리랜서)

돈을 뜯는 것도 내 탓이라네

다양한 직종 노동자

아무리 성실해도 내년은 없네

휴식없고 인격모독 너도 당해봐라

보육교사

쉬고싶다 쉬고싶다 CCTV야

나를 위해 한번만 고개 돌려주렴

사무직 노동자

나나나나나나 상여금 학방알고

정시퇴근 꿈꾸며 야근하라 라면 먹지

상담직 노동자

아무리 전화해도 대답이 없네

성공하고 싶지만 제자리인걸

생활지원사

나는 생활지원사 교통통산비 줘

차량보험 들어줘 위치주적 싫어!

서비스직 노동자

폭언폭설 인격모독 하지말아라

나를 위해 따뜻한 말을 건네주렴

어르바이트 노동자

나도 사람인데 존중 좀 해주세요

우리들도 휴식이 필요하답니다

하지마라 하지마라 막말말아라

요양보호사

센터장은 한번만 우리편 돼줘라

아아 연대의 밤 뜨거운 기슴안고

노동존중 그날을 향해 함께 가자

월동자



한미당 노래가사 바꾸기(개똥벌레)

## 5) 행사 사진



강사(프리랜서) 라운드테이블



다양한 직종 노동자 라운드테이블



보육교사 라운드테이블



사무직 노동자 라운드테이블



상담직 노동자 라운드테이블



생활지원사 라운드테이블



서비스직 노동자 라운드테이블



아르바이트 노동자 라운드테이블



요양보호사 라운드테이블



활동가 라운드테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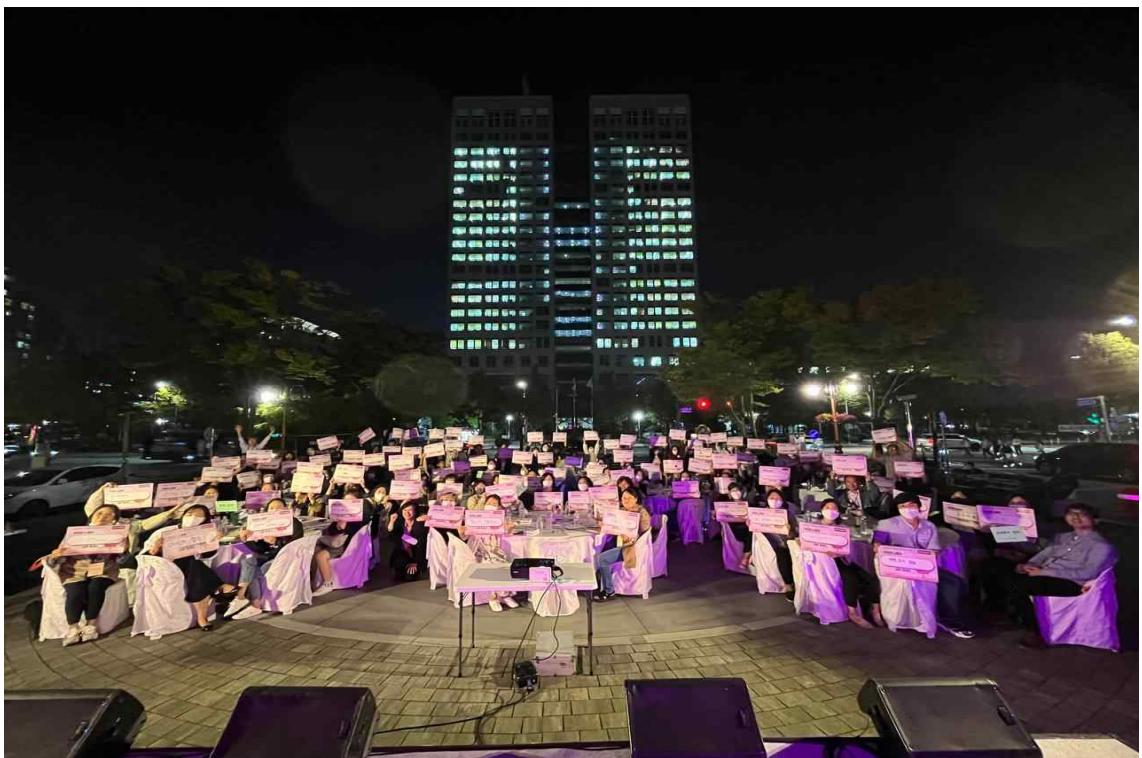
국악 공연(이한별)



전체 사진



전체 사진 2



전체 미션지 사진



전체 사진 3

업종코드

ID

## 대전광역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 & 생활환경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하는 대전광역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 및 생활환경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이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33조 및 34조에 의거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전혀 이용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해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개선을 위해 설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주관기관 :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정책국장 나규정 042-345-2573)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www.djiw.or.kr](http://www.djiw.or.kr)

## [1] 응답자 인구 사회학적 특성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여성    ② 남성    ③ 기타

2.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3.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 ① 유성구    ② 서구    ③ 중구    ④ 동구    ⑤ 대덕구    ⑥ 기타

4. 귀하의 가구원 수는 어떻게 되십니까(본인 포함)?

- ① 1인    ② 2인    ③ 3인    ④ 4인    ⑤ 5인 이상

5. 귀하의 직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 ① 유성구    ② 서구    ③ 중구    ④ 동구    ⑤ 대덕구    ⑥ 기타

6.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주부, 학생 등은 이전직업을 작성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                          )

## [2] 종사유형

7. 귀하는 현 직장 이전에 어떤 경제활동에 종사하셨습니까?

- ①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음(학생/주부 등)    ② 정규직 임금노동자    ③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④ 프리랜서/특수고용종사자                      ⑤ 자영업자/개인사업    ⑥ 활동가  
⑦ 기타 (                          )

8. 현재 직장의 직원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5인 미만      ② 5인 이상 - 10인 미만      ③ 10인 이상 - 30인 미만  
④ 30인 이상 - 50인 미만      ⑤ 50인 이상

9. 귀하의 근로기간(현 직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③ 1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10. 귀하의 근로시간(1주일 단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5시간 미만      ② 15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③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④ 40시간 이상 - 52시간 이하      ⑤ 52시간 초과

11. 귀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까?

- ① 작성하였다      ② 작성하지 않았다      ③ 기타( )

12. 귀하의 고용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파견/용역)      ③ 무기계약직      ④ 계약직  
⑤ 시간제(파트타임)노동자      ⑥ 특수고용직/프리랜서      ⑦ 기타( )

[3] 노동실태

13. 귀하의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1) 고용보험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잘 모름	④ 기타( )
2) 산재보험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잘 모름	④ 기타( )
3) 건강보험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잘 모름	④ 기타( )
4) 국민연금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잘 모름	④ 기타( )

14. 귀하의 월평균 임금(세전)은 얼마입니까?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15. 귀하의 가구원 중 본인의 소득 비율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5% 미만      ② 25% 이상 - 50% 미만      ③ 50% 이상 - 75% 미만  
④ 75% 이상 - 100% 미만      ⑤ 100%

16. 귀하의 가구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식비(외식 등)	②	문화취미생활	③	저축(투자 등)	④	육아
⑤	의복비	⑥	교육비(학원 등)	⑦	부채 상환비	⑧	교통비
⑨	보건·의료비	⑩	경조사비	⑪	종교 및 기부금	⑫	주거비(관리비 등)

17. 귀하는 현재까지 직장에서 근무 중 경험하신 부당한 사례들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폭언      ② 폭행      ③ 성희롱/성추행      ④ 업무상 괴롭힘(갑질)  
⑤ 임금체불      ⑥ 근로계약서 미작성      ⑦ 추가 근무수당 미지급      ⑧ 부당해고  
⑨ 관리자의 지시로 휴가를 쓰지 못함      ⑩ 업무(계약) 외의 일을 지시받아 수행  
⑪ 부당한 일을 겪은 적이 없다      ⑫ 기타(      )

18. 부당한 일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 ① 그냥 참는다      ② 당사자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한다.  
③ 직장 내부적인 시스템으로 처리한다      ④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의 도움을 받는다  
⑤ 온라인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는다      ⑥ 공적 기관(경찰, 고용노동부 등)의 도움을 받는다  
⑦ 법률 소송을 한다      ⑧ 지인에게 도움을 받는다  
⑨ 부당한 일을 겪은 적이 없다      ⑩ 기타(      )

19. 현재 귀하의 직장에서 실행 중인 복지제도를 모두 선택해주시오.

- ① 교통비 지원      ② 명절수당      ③ 점심식대      ④ 가족수당  
⑤ 복리후생비      ⑥ 장기재직 휴가      ⑦ 복지포인트      ⑧ 경조사비  
⑨ 자기계발지원      ⑩ 생일선물      ⑪ 휴가비      ⑫ 명절선물  
⑬ 교육비(본인) 지원      ⑭ 건강검진비 지원      ⑮ 자녀학자금 지원      ⑯ 사내동호회 지원  
⑰ 복지제도 없음      ⑱ 기타(      )

#### [4] 노동환경 만족도 및 정책 제안

20. 귀하가 근무하는 직장 및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내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고용안정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노동시간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노동강도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고용 형태에 대한 만족도(정규직/비정규직 등)	①	②	③	④	⑤
조직문화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건강과 안전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직장 내 성평등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직업으로서 장기적 전망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21. 현재 귀하의 직장에서 실행되기 희망하는 복지제도를 최대 3개 선택해주십시오.

- |              |            |            |            |
|--------------|------------|------------|------------|
| ① 교통비 지원     | ② 명절수당     | ③ 점심식대     | ④ 가족수당     |
| ⑤ 복리후생비      | ⑥ 장기재직 휴가  | ⑦ 복지포인트    | ⑧ 경조사비     |
| ⑨ 자기계발지원     | ⑩ 생일선물     | ⑪ 휴가비      | ⑫ 명절선물     |
| ⑬ 교육비(본인) 지원 | ⑭ 건강검진비 지원 | ⑮ 자녀학자금 지원 | ⑯ 사내동호회 지원 |
| ⑰ 기타( )      |            |            |            |

22. 현재 직장에서 일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                          |                         |
|--------------------------|-------------------------|
| ① 수입이 필요해서               | ② 일 자체에 대한 보람과 사명감      |
| ③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 ④ 근로조건(시간/임금 등)에 만족해서   |
| ⑤ 전공 및 적성에 맞아서           | ⑥ 원하는 전공이나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
| ⑦ 육아/가사/학업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 ⑧ 일 자체가 재미있어서           |
| ⑨ 기타( )                  |                         |

23. 귀하는 추후 현재의 직장에서 이직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있다(23-1로 이동)      ② 없다(24로 이동)

23-1. 이직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낮은 임금      ② 불안정한 고용      ③ 전공이나 적성과 맞지 않음  
④ 업무환경이 열악함      ⑤ 직장상사나 동료와의 불화      ⑥ 직업으로서 장기적인 전망이 불투명함  
⑦ 학업, 육아, 질병 등 개인적 사유      ⑧ 기타 ( )

24. 소규모사업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대전시가 해야 할 정책의 우선도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근로기준법 등 위반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	①	②	③	④	⑤
2) 일자리 소개 및 취업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①	②	③	④	⑤
4)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직업훈련	①	②	③	④	⑤
6)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	①	②	③	④	⑤
7) 여가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8) 건강상담 및 예방프로그램 운영	①	②	③	④	⑤
9) 직장 내 대변조직 및 고충처리제도 마련	①	②	③	④	⑤

25.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강좌) 중 최대 3개 선택해주십시오.

- ① 재취업 훈련교육      ② 역량강화 강좌(파워포인트, 엑셀 등 업무능력 향상강좌)  
③ 노동인권교육(근로기준법 등)      ④ 문화·취미 강좌      ⑤ 창업 강좌  
⑥ 아이 돌봄·교육 강좌      ⑦ 부부생활·가정생활 강좌      ⑧ 인문학 강좌  
⑨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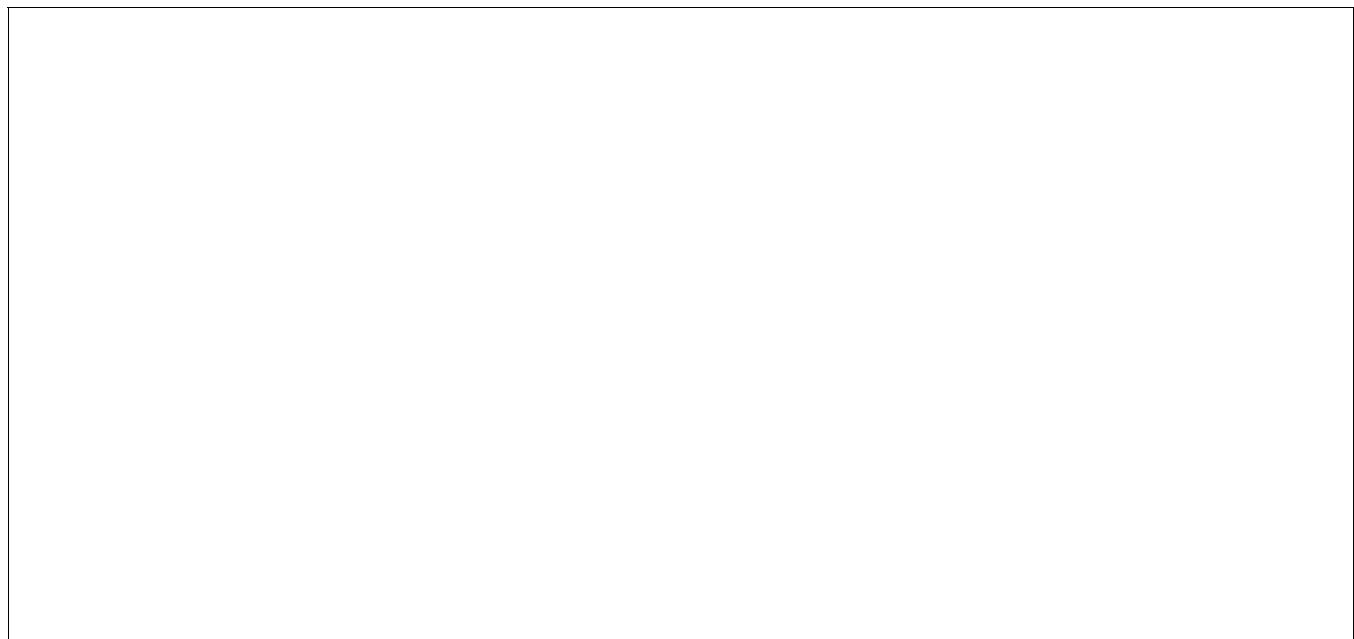
26.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직종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② 필요 없다      ③ 잘 모르겠다

27. 같은 직종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후 노동조건 개선과 생활 협동조합 등을 위한 활동을 한다면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간담회, 원탁회의 등)

- 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 ② 여건이 되면 참여하겠다
- ③ 생각해 보겠다
- ④ 참여하지 않겠다
- ⑤ 기타( )

\* 기타 개인 의견을 자유롭게 써주세요. (추가적인 의견이 없으시면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응답에 관한 사례로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해 드립니다. 받으실 연락처를 따로(답례품 대장) 남겨주세요.  
(모바일 상품권은 설문 작성일의 다음 주 초에 일괄 발송됩니다.)

일하다가 부당한 피해를 당한 경우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 상담하세요.

**카카오톡 상담**  
**플러스친구 아이디 - djiw**

**상담전화**  
**1566-2569**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대전도시공사 2층  
Tel. 042-345-2569/ Fax. 042-345-2568  
E-mail. djcws@naver.com  
홈페이지. [www.djiw.or.kr](http://www.djiw.or.kr)